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0787-10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출 원 가 이 드 북

2008. 12

www.kip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0787-10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출 원 가 이 드 북

2008. 12

www.kipo.go.kr



특 허 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발간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의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은 2003년에 30만건 시대에 접어든 이후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2007년의 경우 2003년 대비 24.2%p 증가한 출원 38만여 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민생활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전환의 시대 조류에 부응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보다 더 정확하게 특허행정에 반영하고자 2006. 6. 1일 중앙부처 최초로 대민서비스행정을 전담하는 고객서비스국이 생긴 이래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신속·정확한 방식심사, 수수료 체계 정비, 법령·지침 개정 및 방식심사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고객의 목소리에 기초한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고객의 소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객통합관리시스템(CRM)을 구축하고, 수수료 예납 제도 도입 및 출원서류 오류율 감소를 위한 Expert System 구축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출원 가이드북은 전자출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시스템 접근 활용도 제고, 오답노트 형식으로 틀리게 작성하기 쉬운 서식의 작성 요령 기재 및 자주하는 질의·응답(FAQ)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도 실수하지 않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출원 가이드북이 특허고객의 눈과 귀가 되어 출원을 하는데 있어 불편사항을 쉽게 해소 할 수 있도록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12월

고객서비스국장

이영근



풀어나가는 순서



제1장 출원 가이드북의 지향점 / 2

처음 출원하시는 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 실수하지 않고, 쉽게 출원하실 수 있도록 출원 가이드북이 함께 합니다



제2장 출원절차, 쉽게 이해하기 / 8

특허절차 첫 관문인 출원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출원 및 방식심사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제3장 실전, 온라인 출원 / 28

전자출원을 이용하시면 실수도 적고, 편리합니다.
전자출원 이용방법을 꼭 읽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4장 유익하고 재미있는 통계 및 정보 / 78

유익하고 재미있는 각종 통계 및 정보를 살펴보세요.
특허가 여러분의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느껴집니다.



제1장

출원 가이드북의 지향점



Point

전자출원 활용방법, 틀리게 작성하기 쉬운 서식의 작성요령 등을 제공하여 더 이상 출원단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하는 출원 가이드북의 발간 취지를 이해



1. 출원 방식심사 및 오류율

- 1) 서면주의&방식심사
- 2) 출원서류 오류율

2. 출원서류 오류율 감소 대책

- 1) 폭넓은 의견수렴
- 2) 전자출원시스템(출원 Expert System)

3. 출원 가이드북 주요내용



제1장 출원 가이드북의 지향점

1 출원 방식심사 및 오류율

1) 서면주의 & 방식심사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을 해야 하며, 출원시 서면주의가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출원서, 명세서 및 그 밖의 첨부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가 소정의 방식에 위배 되거나 출원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출원절차는 완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그 사유와 경중에 따라 무효 또는 반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원 방식심사는 이러한 절차에 관한 결함의 유무를 점검하여 보정·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 무효 또는 반려처분을 하게 되는 출원단계에서의 절차입니다.

2) 출원서류 오류율

특허청은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서 등에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최근 5년간 출원서류 오류율을 분석한 결과 출원인이 작성·제출한 서류 중 매년 4%대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평균
오류율(%)	4.66	4.50	4.28	4.25	4.98	4.53

또한 최근 5년간 오류율 변동 현황도 직접출원('03년 8.80% → '07년 13.80%), 개인출원('03년 5.29% → '07년 7.47%), 서면출원('03년 3.45% → '07년 7.99%), 면제자출원('03년 5.40% → '07년 6.08%)이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오류율 감소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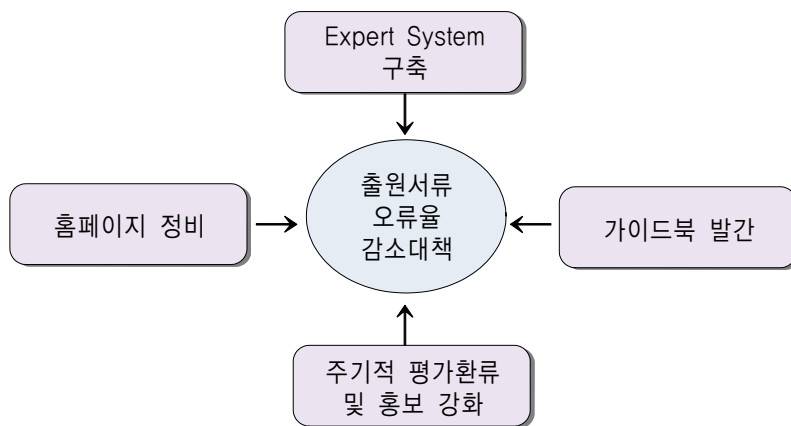
출원서류 오류율 감소 대책

1) 폭넓은 의견수렴

출원서류 오류율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7월 출원인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한 485명 중 202명(41.6%)이 ‘전자출원 등 시스템 분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전자출원 등 시스템	서류 작성 및 용어	출원절차	홍보 및 정보·자료 제공	콜센터 질의 및 태도	공무원의 태도
202 (41.6%)	133 (27.4%)	70 (14.4%)	57 (11.8%)	12 (2.5%)	11 (2.3%)

이러한 고객의 요구를 토대로 출원 Expert System 구축, 홈페이지 재구성 및 출원가이드북 발간 등 시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출원서류 오류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출원 Expert System

전문가가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안내하는 시스템으로 현 전자출원시스템에 오류검증기능 강화, 오류검증문구 정비, 콜센터와의 연계체계 및 오류해결시스템을 구축, 출원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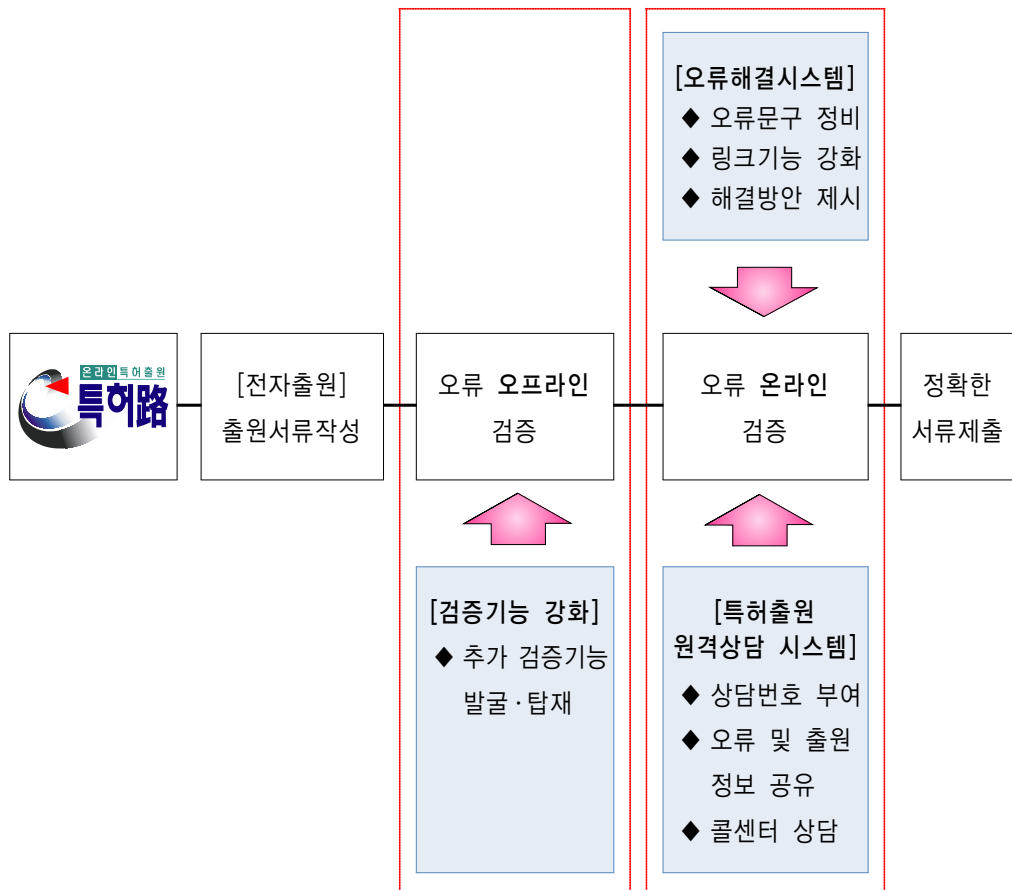
2) 전자출원시스템(출원 Expert System)

전자출원제도는 ‘특허넷 시스템’ 개발로 1999년 1월 시행되어 10년째 접어들고 있으며, 공공부문 정보화 영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특허청 정보화의 상징입니다.

‘특허로’라는 온라인 특허출원시스템을 통하여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E메일을 보내듯이 출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그 편리성으로 인해 1999년 시행 초창기 74.0%였던 전자출원율은 매년 증가하여 2005년 이후 90%대에 진입하여 이미 정착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출원서류 오류율 감소 대책의 핵심은 전자출원시스템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강화하는 것이며, 이 시스템에 ‘출원 Expert System’이 최종 탑재되는 2009년 6월 이후에는 시스템의 편리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pert System'() 도입 후 전자출원 체계도]



3

출원 가이드북 주요내용

출원 가이드북은 2008년 3월 출원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와 2007년 기준으로 온라인 서류 제출이 90.5%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전자출원시스템을 변리사 등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개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3장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원인 등이 서식 작성시 자주 실수하는 주요 오 기재 사항을 실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도 실수하지 않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답노트 형식으로 제작하였으며, 출원 방식심사와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의·응답(FAQ) 및 특허청과 유관기관의 기능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정보도 덧붙였습니다.

전자출원시스템의 오류검증 기능('08.9월) 강화,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09.1월) 및 오류원인별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오류해결시스템('09.6월)이 구축되면 출원서류 오류율도 감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허청에서는 전자출원의 활발한 이용과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출원서류 오류율 변동현황 및 고객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환류하여 개선사항을 출원 가이드북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출원인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장

출원절차, 쉽게 이해하기



Point

출원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내용과 절차, 출원서식 작성 및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편리한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출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고



1. 산업재산권 소개

2. 출원 전 준비사항

3. 출원에서 등록까지

- 1) 출원(심사청구)
- 2) 방식심사
- 3) 실체심사
- 4) 보정서(의견서)
- 5) 등록/거절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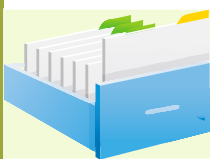
4. 다양한 출원서식 간단히 알아보기

- 1) 다양한 출원절차
- 2) 출원인(발명자) 관련
- 3) 심사 관련
- 4) 기간 관련
- 5) 출원 공개 및 취하(포기)
- 6) 서류제출 및 정보제공

5. 알면 편리한 Tip

- 1) 방식심사를 빨리 진행하고자 할 때
- 2) 심사결과를 빨리 받고자 할 때 (우선심사신청)
- 3) 권리관계변경신고서 작성시 유의할 점
- 4) 맞춤형 심사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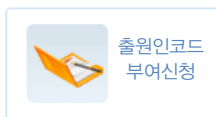


제2장 출원절차, 쉽게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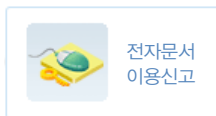
1 산업재산권 소개

	정의	존속기간
1) 특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 수준이 고도한 것 ex) 무선통화 기술	특허등록일 부터 특허출원 후 20년
2) 실용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 ex) 핸드폰 안테나 조립 장치	실용신안등록일부터 실용신안 출원 후 10년
3)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ex) 핸드폰 전체 형상	등록일부터 15년
4) 상표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ex) 핸드폰 브랜드 (애니콜, 싸이언)	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 등록시 반영구적으로 사용

2 출원 전 준비사항



특허출원을 처음 하려면 먼저 출원인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출원인코드는 출원인의 기본정보(성명, 주소 등)를 하나의 코드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며,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고유번호이고, 한번 등록하면 다른 출원시에도 계속 사용됩니다.



온라인 전자출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코드 부여와 전자문서이용신고가 승인된 후에는 특허청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특허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출원에서 등록까지



※ 예제로 보는 출원절차

접수/발송번호	접수/발송일자	서류명
1-1-2005-0316824-47	2005. 06. 15 1)	특허출원서
9-1-9999-9999999-89	2006. 04. 11	선행기술조사의뢰서
9-1-2006-0028578-75	2006. 05. 11	선행기술조사보고서
9-5-2006-0343124-10	2006. 06. 16 3)	의견제출통지서
1-1-2006-0582531-26	2006. 08. 16 4)	의견서
1-1-2006-0582530-81	2006. 08. 16	명세서등보정서
9-5-2006-0525315-47	2006. 09. 07 5)	등록결정서

2) 방식심사

제출된 서류는 반드시 방식심사를 거쳐 흠결이 없는 경우만 진행되게 됩니다.

1) 출원(심사청구)

① 출원인

특허(실용신안)	발명(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디자인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
상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자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예 : 친권자)에 의하지 않으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② 구비서류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1. 출원서 2. 요약서, 명세서, 도면 ※ 방법특허인 경우 도면 생략 가능(단, 실용신안은 반드시 도면 필요)	1. 출원서 2. 도면(또는 사진, 견본을 제출할 경우 견본, 사진을 첨부)	1. 출원서 2. 상표견본(가로세로 각각 8cm 이내) 3. 상표에 대한 설명서(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 상표 및 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등록 출원에 한함)

※ 특허·실용신안에서 권리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은 명세서 중 청구범위이므로 기재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상표에서 지정상품은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제출방법

a. 방문 접수

- 장 소 :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 접수시간 : 09:00~18:00 (토요일 09:00~13:00)



b. 우편 접수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 우체국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인정 (PCT국제출원은 도달일)



c. 온라인 접수

- 특허路 <http://www.kipor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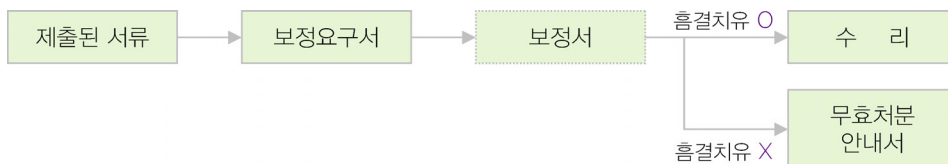
2) 방식심사

방식심사란 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에 제출한 서류가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및 산업재산권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관련 서류에 대한 방식심사는 서류의 기재방식, 첨부서류, 수수료 납부사항 등에 대해서 실시하여 흠결이 없으면 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정요구 또는 반려이유통지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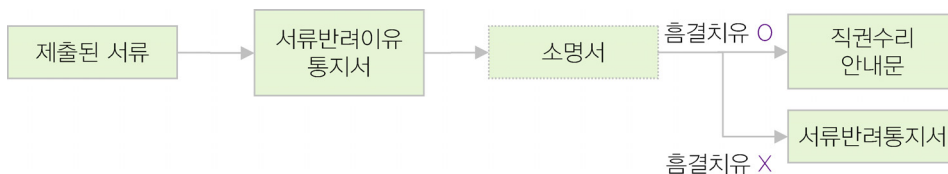
① 치유할 수 있는 흠결 발생

방식심사 결과 보정이 가능한 서류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서를 보냅니다. 출원인은 보정요구서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여 하자를 치유하게 됩니다. 지정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보정서로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 경우 해당 서류를 무효처분 합니다.



② 치유할 수 없는 흠결 발생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치유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려이유통지서를 보냅니다. 출원인은 이에 대하여, 지정기간 내에 반려이유통지서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소명서는 의견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미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제출된 서류는 직권수리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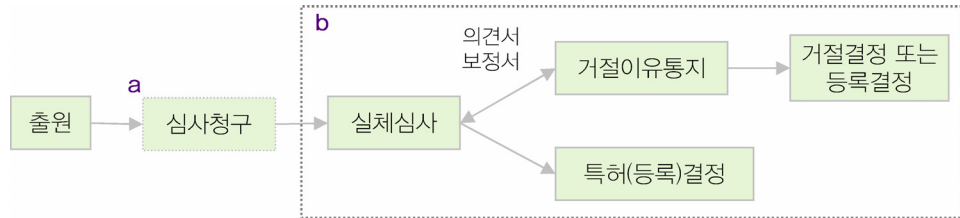
만일, 반려이유통지를 받고 소명서 제출기일 이전에 서류를 반려받으려면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실체심사

실체심사란 출원이 특허(등록)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①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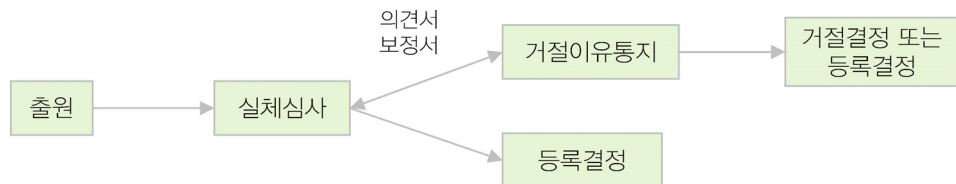
a. 심사청구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심사는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수행하며, 심사순서는 심사청구순서에 의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인은 물론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후 일정기간 내에(특허는 5년, 실용신안은 3년) 심사청구(심사청구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원에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제출된 이후에만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b. 실체심사절차

심사관은 심사결과 특허(등록)결정서나 거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심사관은 거절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절이유를 통지 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② 디자인심사등록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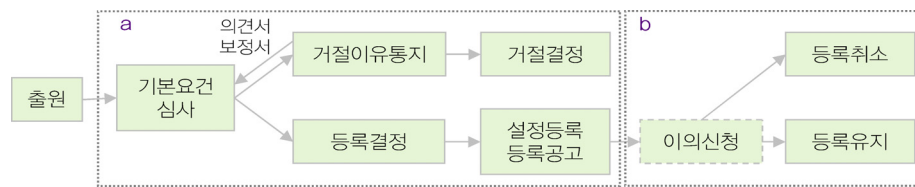
방식심사가 완료된 출원서에 대해 출원순서에 따라 실체심사가 착수됩니다. 심사관이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결정을 하며, 거절이유 발견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기회를 부여합니다. 의견서 또는 보정서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등록결정을, 그렇지 못하면 거절결정을 합니다.

③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 창작이 활성화되고 출원이 증가됨에 따라 창작된 디자인이 신속히 권리화될 수 있도록 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무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무심사대상물품

A1(제조식품 및 기호품), B1(의복), C1(침구, 마루갈래, 커튼 등), F3(사무용지제품, 인쇄물 등), F4(포장지, 포장용기 등), M1(직물지, 판, 끈 등) 등 총 6개 대분류에 속하는 물품



a. 기본요건심사

실체적 요건은 심사하지 않고 기본적인 등록요건을 만족하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b. 이의신청

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심사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 누구든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관 3인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디자인권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상표등록출원



a. 출원공고

상표의 공익성과 출원상표의 다양성에 비해 심사관의 심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공중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b. 이의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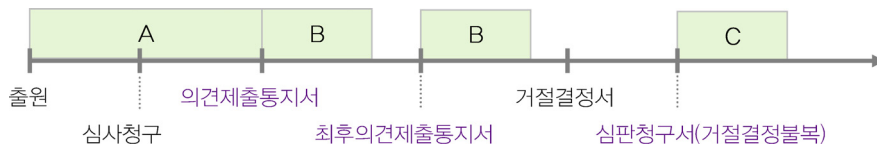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연장 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및 답변서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절결정을,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4) 보정서(의견서)

출원인은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거절이유를 해소하고자 지정기간 내에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법에서는 심사관으로부터 통지가 없더라도 자진해서 보정할 수 있는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제출된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명세서 등 보정서)

명세서 등 보정서는 출원의 요약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때 사용하는 서식으로 제출가능 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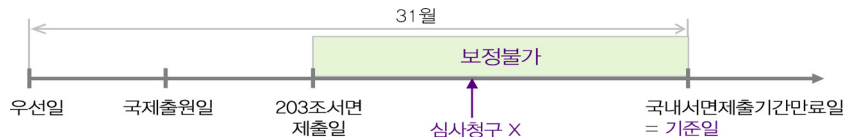


- ❖ A구간 : 출원 후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전까지 제출가능
(제출원인이 된 서류 : 출원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 ❖ B구간 :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제출기일까지 제출가능
(제출원인이 된 서류 : (최후)의의견제출통지서의 발송번호를 기재)
- ❖ C구간 :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까지 특허심판원에 제출
(제출원인이 된 서류 : 심판청구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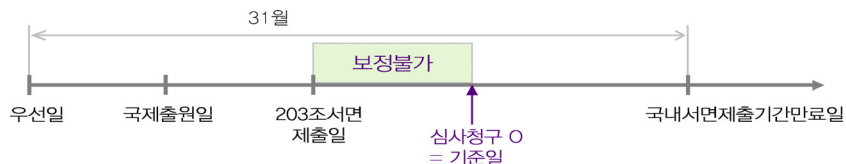
② 국제특허출원(명세서 등 보정서)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제출원일 이후에는 특허·실용신안출원의 보정과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수수료의 납부 및 번역문 제출 전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계속될 것인지 여부가 확정적이지 아니하고, 국제출원에 대한 번역문의 내용도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보정이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 ▶ 국내서면제출기간만료일 이전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국내서면제출기간만료일이 기준일이 되고 기준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보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국내서면제출기간만료일 이전에 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청구일이 기준일이 되고 심사청구일 전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③ 디자인심사등록출원(출원서 등 보정서, 도면 등 보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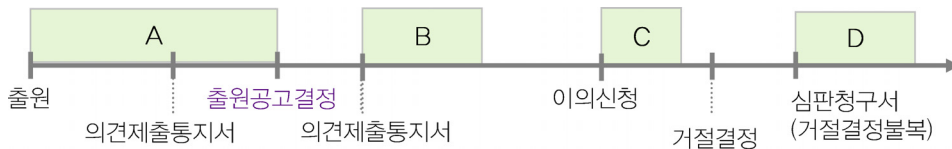
출원서의 기재사항, 유사디자인과 단독디자인의 변경, 무심사등록출원과 심사등록출원의 변경 등을 보정하는 경우로 제출가능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 A구간 : 출원 후 거절결정서 송달 전까지 제출가능
(제출원인이 된 서류 : 출원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후 제출기일 내라면 의견제출통지서의 발송번호 기재)
- ❖ B구간 : 심판(거절불복)청구일로 부터 30일까지 특허심판원에 제출
(제출원인이 된 서류 : 심판청구의 접수번호를 기재)

④ 상표등록출원(출원서 등 보정서, 상표견본의 보정서)

지정상품 및 상표견본을 보정하는 출원서등 보정서는 제출가능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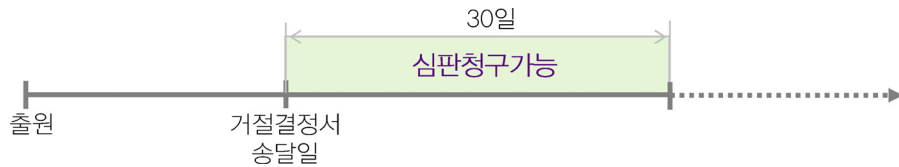
- ❖ A구간 : 출원 후 출원공고 전까지
(제출원인이 된 서류 : 출원서의 접수번호를 기재,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후 제출기일 내라면 의견제출통지서의 발송번호 기재)
- ❖ B구간 : 출원공고 후 의견제출통지서가 송달되면 의견제출기일까지
(제출원인이 된 서류 : 의견제출통지서의 발송번호 기재)
- ❖ C구간 : 이의신청이 있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내
(제출원인이 된 서류 : 이의신청서에 대한 부분송달서의 발송번호를 기재)
- ❖ D구간 : 심판(거절불복)청구일로 부터 30일까지 특허심판원에 제출
(제출원인이 된 서류 : 심판청구의 접수번호를 기재)

⑤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는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제출기일까지 제출가능합니다.

5) 등록/거절결정

- ① 보정서를 통하여도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합니다. 출원인은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내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가 없으면 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② 출원발명이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록결정을 합니다. 등록결정이 되면 등록결정서에 함께 송부된 납입고지서로 등록료와 등록세를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등록료의 납부기간〉

권리별	정상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정상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
상 표 (지정상품추가등록 및 존속기간갱신등록 포함)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	추가납부 기간이 없고, 납부기간 연장제도(1회)가 있음

4

다양한 출원서식 간단히 알아보기

1) 다양한 출원절차

① 변경출원

출원시에 권리를 잘못 선택하여 출원하였다면 올바른 권리로 변경출원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간, 그리고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지정상품 추가
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할 수 있습니다. 변경출원을 하면 선출원일에 출원
한 것으로 인정되고 선출원은 취하간주됩니다.



특허법 제53조, 실용신안법 제10조,
디자인보호법 제18조, 상표법 제19조

단독디자인↔유사디자인
디자인심사↔디자인무심사



출원서
(특칙 별지 제14호, 실칙 제1호, 디칙
제3호, 상칙 제2호 서식)

보정서[구분 : 출원서 등 보정]
(디칙 별지 제2호 서식)

② 분할출원

2 이상의 발명·고안(디자인, 지정상품)을 하나의 출원으로 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선출원일로 인정됩니다.



특허법 제52조, 실용신안법 제10조,
디자인보호법 제19조, 상표법 제18조



출원서 등 보정서
(특칙 별지 제14호, 실칙 제1호, 디칙
제3호, 상칙 제2호 서식)

③ 우선권주장 출원

특허출원 등(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당해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하는 발명을
한 경우에 이들 발명에 대한 보호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특허(등록)요건 심사시 선출원
일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특허법 제54조, 제55조
디자인보호법 제9조, 상표법 제9조



출원서 제출시 우선권주장

2) 출원인(발명자) 관련

① 출원인코드를 신청할 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모든 서류에 제출인의 성명 및 고유번호(출원인코드)를 기재하므로 고유번호를 받기위해 제출합니다. 출원인코드 신청시에는 사용할 인감도 첨부합니다.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특칙 별지 제4호 서식)

② 출원인의 개인정보를 변경할 때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출원인이 성명, 주소,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출합니다.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



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구분 : 출원인코드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특칙 별지 제5호 서식)

③ 해당 출원에 본인의 다른 출원인코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

동일한 출원인이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아 이를 하나로 정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동일한 출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



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구분 : 출원인코드정정]
(특칙 별지 제5호 서식)

④ 공동출원인 중 대표자를 선임할 때

출원인이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출원인이 전부 날인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특허법시행규칙 제6조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구분 : 대표자 선임]
(특칙 별지 제2호 서식)

⑤ 발명자(고안자, 창작자) 정정을 할 때

출원시 착오로 인하여 출원서의 발명자를 정정하려고 할 때 특허여부결정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자의 기재가 오기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여부결정 이후에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시행규칙 제28조



보정서
[구분 : 출원서 등 보정]
(특칙 별지 제9호 서식 다칙 별지 제2호 서식)

⑥ 출원중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출원중인 권리를 타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양도 할 때, 양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참고로 출원인지분변경신고서는 출원인의 변경 없이 출원인들의 지분만 변경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특허법 제37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26조



권리관계변경신고서
(특칙 별지 제20호 서식)

3) 심사 관련

① 심사청구할 때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후 일정기간내에(특허는 5년, 실용신안은 3년) 심사청구 및 심사청구료를 납부합니다. 심사청구는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이 된 후에는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가 없을 때에는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출원서 작성시 심사청구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였다면 별도의 심사청구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60조
실용신안법 제15조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구분 : 심사청구]
(특칙 별지 제22호 서식)

② 빠른 심사를 원할 때

우선심사신청은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심사청구된 것과 디자인등록출원 중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고안을 무단실시하는 경우(출원공개된 건에 한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은 벤처기업출원, 출원 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 우선심사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구분 : 우선심사신청]
(특칙 별지 제22호 서식)

③ 늦은 심사를 원할 때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시기나 시장성 조사 등으로 인해 일반심사보다 늦게 심사받고자 하는 출원인은 심사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유예신청제도를 활용하면 정확한 특허심사 시기를 미리 결정할 수 있고, 발명이 조기공개되거나 특허(등록)유지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늦은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부터 6개월이 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하여 심사유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결정보류(심사유예)신청서
[구분 : 심사유예신청]
(특칙 별지 제22호의2 서식)

④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를 받았을 때

심사관이 지정한 의견제출통지에 대하여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41조
디자인시행규칙 제18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



의견서
[구분 :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
(특칙 별지 제24호, 디칙 별지 제2호, 상칙 별지 제1호 서식)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디자인시행규칙 제3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10조



보정서[구분 : 명세서 등 보정]
(특칙 별지 제9호서식),
보정서[구분 : 도면 등 보정]
(디칙 별지 제2호서식),
보정서(상칙 별지 제4호 서식)

4) 기간 관련

① 지정기간을 연장할 때

심사관이 지정한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보정요구서에 대한 보정기간 등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연장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지정기간의 경우 연장횟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



지정기간(단축, 경과구제)신청서
[구분 : 지정기간연장]
(특칙 별지 제10호 서식)

② 지정기간을 단축할 때

심사관이 지정한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보정요구서에 대한 보정기간 등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는데,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자 할 때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지정기간단축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



지정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구분 : 지정기간단축]
(특칙 별지 제10호 서식)

③ 서류반려이유통지서를 받고 소명없이 빨리 반려받고자 할 때

서류반려이유를 통지받고 소명기간 내에 소명없이 제출한 서류를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반려요청서가 제출되면 소명기간이 남아있어도 해당 서류를 반려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게 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
[구분 : 반려요청]
(특칙 별지 제8호 서식)

④ 법정기간을 연장할 때

법정기간이란 법률상 허용된 기간으로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 또는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특허법 제15조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4조
상표법 제5조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구분 : 법정기간연장]
(특칙 별지 제10호 서식)

5) 출원 공개 및 취하(포기)

① 조기공개신청

출원 공개일(출원일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일반에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조기공개 후 국내우선권주장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하하려면 조기공개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특허법 제64조
실용신안법 제15조



조기공개신청서
(특칙 별지 제25호 서식)

② 디자인등록출원 공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개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2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다칙 별지 제7호 서식)

③ 비밀디자인청구

출원인이 디자인을 비밀로 하려면 출원시 또는 출원 후 비밀디자인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때 제출하며, 디자인비밀기간은 연장(단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3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



비밀디자인청구서
(다칙 별지 제8호 서식)

④ 출원을 취하(포기)할 때

계속 중인 출원건을 취하(포기)할 때 제출합니다. 공동출원인의 경우 반드시 출원인 전원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하는 출원절차를 출원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며, 출원 공개전이라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는 출원절차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취하(포기)서
[구분 : 특허 등 절차 취하]
(특칙 별지 제12호 서식)
취하(포기)서
[구분 : 특허 등 절차 포기]

6) 서류제출 및 정보제공

① 온라인출원시 첨부하지 못한 서면서류 및 물건을 제출할 때

온라인출원시 첨부해야 할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는 3일 이내에 '전자문서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또한 CD를 비롯한 전자적 기록매체나 기타 물건을 제출할 경우에도 작성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전자문서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
(특칙 별지 제7호 서식)

② 타인의 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타인의 출원에 대하여 거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보제공을 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정보제출서가 제출되면 심사관은 제출된 정보에 대한 심사인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제63조의2
실용신안법 제15조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5
상표법 제22조



정보제출서
[구분 : 출원에 대한 정보]
(특칙 별지 제23호 서식)

③ 본인의 출원에 대하여 참고자료 제출

출원인이 심사 또는 심판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정보제출서
[구분 : 참고자료]
(특칙 별지 제23호 서식)

④ 우선심사신청보완요구서를 받았을 때

우선심사신청서와 관련하여 심사관으로부터 보완요구서를 받고 우선심사신청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단, 보완요구서가 아닌 보정요구서를 받았을 때는 출원서 등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우선심사신청관련서류제출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5

알면 편리한 Tip

1) 방식심사를 빨리 진행하고자 할 때

- ① 특허로 온라인출원을 이용합니다. 우편접수시에는 송달, 분류, 전자화에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됩니다.
- ② 서식 작성시에 올바른 서식여부, 출원인, 출원번호, 제출원인이 되는 서류의 발송(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 ③ 필요한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서지부분에 실제 첨부된 서류의 명칭을 기재요령에 맞게 기재합니다.
- ④ 중복제출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서류가 중복제출되면 선행서류에 대한 처리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 ⑤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온라인 지로납부를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심사결과를 빨리 받고자 할 때(우선심사신청)

- ① 명세서의 청구항을 확인합니다.
→ 청구범위를 유예한 경우는 심사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 ② 심사청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③ 우선심사신청서를 작성하고, 우선심사설명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우선심사신청설명서로 우선심사의 이유가 충족되지 않으면 심사관의 보완요구서가 발송됩니다. 이 경우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④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 권리관계변경신고서 작성시 유의할 점

- ① 권리관계변경신청서의 출원번호, 양도인과 양수인, 변경원인(예: 일부양도, 전부양도)을 확인합니다.
- ② 양도증의 출원번호,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 변경원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③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의 인감과 양도인 인감의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 ④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⑤ 양도증을 공증받는 경우,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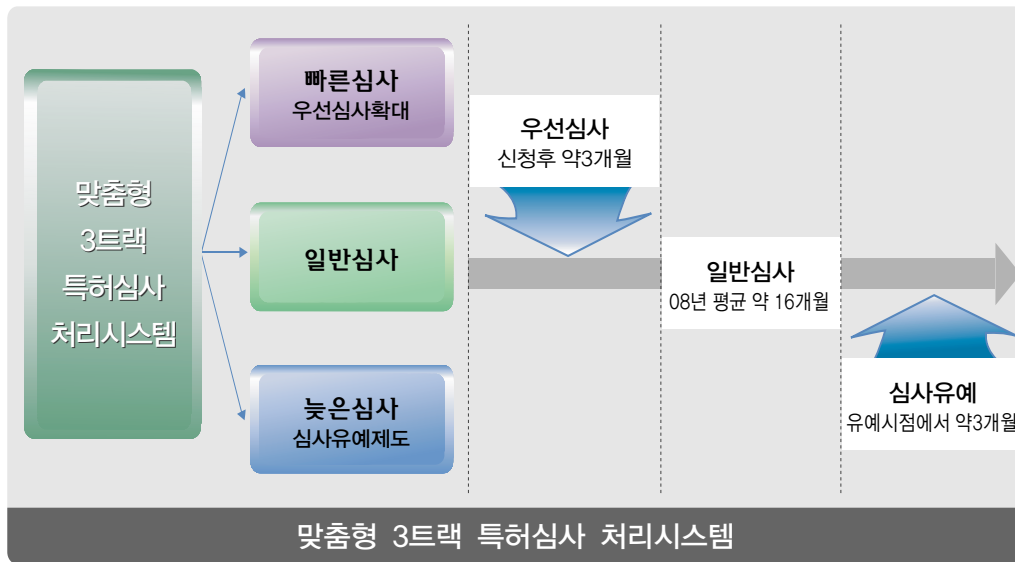
4) 맞춤형 심사 제도

2008.10.1.부터 특허출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른심사, 일반심사, 늦은심사의 세가지 서비스중 하나를 자신의 특허 전략에 따라 원하는시기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① 빠른심사 : 우선심사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신청 후 약 2~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② 일반심사 : 심사청구 후 평균 16개월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늦은 심사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시기나 시장성 조사 등으로 인해 일반심사보다 늦게 심사받고자 하는 특허출원인을 위한 것입니다. 심사유예신청제도를 활용하면 정확한 특허심사 시기를 미리 결정할 수 있고, 발명이 조기공개되거나 특허유지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늦은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부터 6개월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심사청구일부터 30개월이 지난 때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12)개월



제3 장

실전, 온라인 출원



Point

전자출원을 통해 출원서류를 작성하고,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시간적·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실수도 줄일 수 있으므로 전자출원 활용방법을 숙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1. 온라인 출원절차 안내도

2. 사전등록 절차안내

3. 특허 등 출원절차 안내

- 1) 웹출원(WEB-PASS)을 이용한 출원
- 2) 전자출원S/W(서식작성기)를 이용한 출원
- 3) 홈페이지 민원서식을 이용한 출원
- 4) 출원서류 제출결과 조회

4. 틀리기 쉬운 서식 기재 사항(오답노트)

- 1) 틀리기 쉬운 특허출원서 기재사항
- 2) 틀리기 쉬운 상표등록출원서 기재사항
- 3) 틀리기 쉬운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 4) 틀리기 쉬운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기재사항
- 5) 틀리기 쉬운 보정서 기재사항
- 6) 틀리기 쉬운 취하서 기재사항

5. 발송 통지서에 따른 제출서류 등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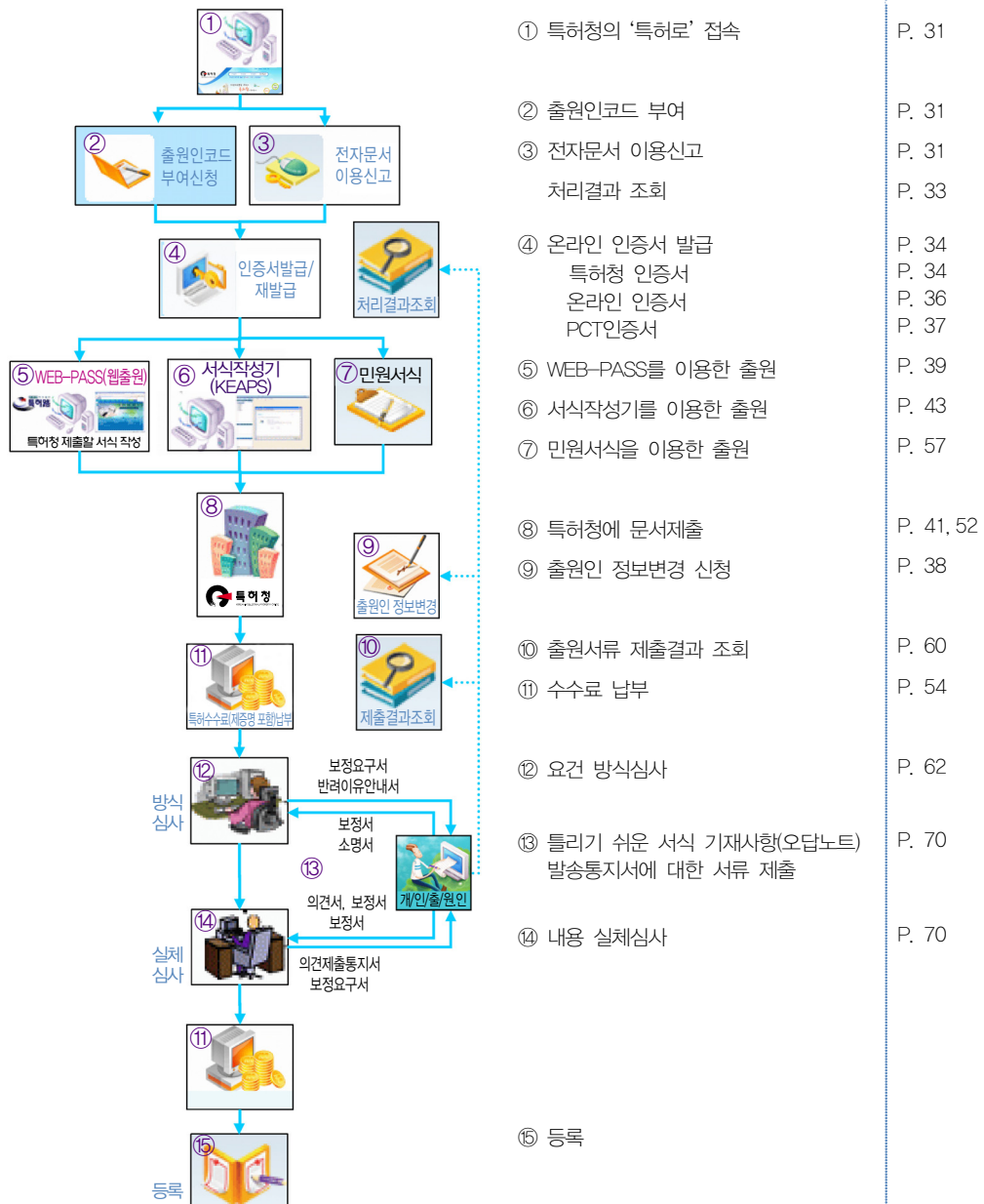
- 1) 특허청 발송 통지서의 구성
- 2) 주요 통지서에 따른 출원인 제출가능 서류
- 3) 특허청 발송통지서에 대한 관련지식 수집





제3장 실전, 온라인 출원

1 온라인 출원절차 안내도



2

사전등록 절차안내

1) 출원인코드 및 전자문서 이용신고

① 출원인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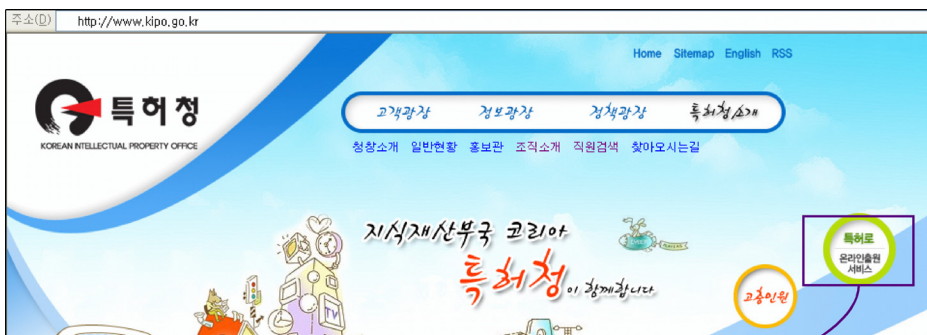
- a. 특허를 받기 위한 출원인 식별 아이디로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출원인은 사전에 코드를 부여 받아야 특허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b. 온라인 출원인코드 신청시에는 미리 사용인감 이미지(JPEG 포맷)를 준비하여 출원인코드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② 전자문서 이용신고

- a. 온라인 전자출원을 하기 위한 신청절차로, 출원인코드 부여신청과 전자문서이용신고서를 하여야만 온라인출원을 위한 전자서명키(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b. 전자문서를 이용한 온라인 출원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수수료 절감 : 서면출원의 전자화 비용(1면당 1천원) 및 송달비용 절감
 - ▶ 신속한 처리 : 서면출원의 송달기간과 전자문서변환 기간 없이 실시간 송달
 - ▶ 오류사항 보정 : 제출서류에 대한 온라인 사전 검증으로 보정사항을 사전에 치유
- ※ 전자문서이용신고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잊었을 경우 전자문서이용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③ 출원인코드와 전자문서 온라인 신청

- a.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로(온라인출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b. 특허로의 사용자 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c. 다음 화면에서 출원인코드부여신청과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클릭합니다.

d. 인감이미지 첨부와 정보 기재(‘*’ 표시정보는 필수 기재) 후 순서에 따라 클릭합니다.

- e. 서류 제출후 ‘출원인코드부여신고서’ 및 ‘전자문서이용신고서’의 접수번호가 공지됩니다.

출원인 코드 부여신청 및 전자문서 이용신고

인쇄

출원인코드를 신청하신 후 발급받으신 아래의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출원인코드 신청에 대한 진행상황 및 결과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서류명
4-1-2008-5165725-17	2008.10.21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4-1-2008-5165726-63	2008.10.21	전자문서이용신고서

④ 사용자등록신청 처리결과 조회

- a. 사용자등록신청의 ‘처리결과조회’를 선택 후 ‘접수번호’ 또는 ‘출원인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절차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서 등록까지 | 사용자등록신청 | 출원·등록 | 제정방법 | 수수료관리 | 고객지원 | 나의출원등록조회 | 고충민원창구 | 특허청

출원인코드부여신청 | 전자문서이용신고 | **처리결과조회** | 인증서 발급/재발급 | 출원인정보변경신고 | 출원인/대리인 코드조회 | 출원인/대리인 인감조회 | 메일링서비스

HOME / 사용자 등록 신청 / 처리결과조회

사용자등록신청

인증서 로그인 |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신청

- 출원인코드 부여신청 → 전자문서 이용신고 → **처리결과조회** → 인증서발급/재발급

처리결과 조회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전등록절차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 - [] - [] - [] - []

성명(명칭) [] ~ []

주인(법인)등록번호 [] ~ []

접수일 2008/10/21 ~ 2008/10/21

[조회하기] [다시보기]

2) 온라인 인증서 발급

① 인증서 : 출원인코드 부여와 전자문서이용신고가 승인 된 후에는 특허청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특허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제출원은 특허청 인증서를 국제(WIPO)규격으로 변환 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② 인증서 발급

a. 특허청 인증서

- ▶ 특허청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인증서로,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PCT인증서변환을 위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 순서에 따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① 클릭

HOME / 사용자 등록 신청 / 인증서 발급 / 국제인증서 변환 / 인증서

사용자등록신청

출원인코드 부여신청 → 전자문서 이용신고 → 처리결과조회 → 인증서발급/재발급

특허청 인증서

로그인

특/허/청/에서는 2002년 2월 9일부터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인증서의 "발급", "유효기간연장", "재발급", 및 "등록취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전자출원의 "사전절차인" "출원인등록" 및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출원인 등록(출원인코드부여 신청서 제출)" 후 얻은 "출원인/대리인코드"와 "전자문서 이용신고"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먼저 로그인하십시오.
- 비밀번호를 잊으신 경우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다시하셔야 합니다.
-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수동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설치파일 다운로드]
- PCT전자출원 사용자 유의사항: 특허청 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PCT전자출원용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재발급 받은 특허청인증서를 "인증센터 > PCT인증서"화면에서 "인증서변환"화신 후 사용하십시오.

"출원인코드신청"후 "발급받은 출원인/대리인코드" [] - [] - [] - []

전자문서이용신고시 입력한 비밀번호 []

로그인

③ 출원인코드와 전자문서이용신고 시 입력한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클릭

특허청 인증서

로그아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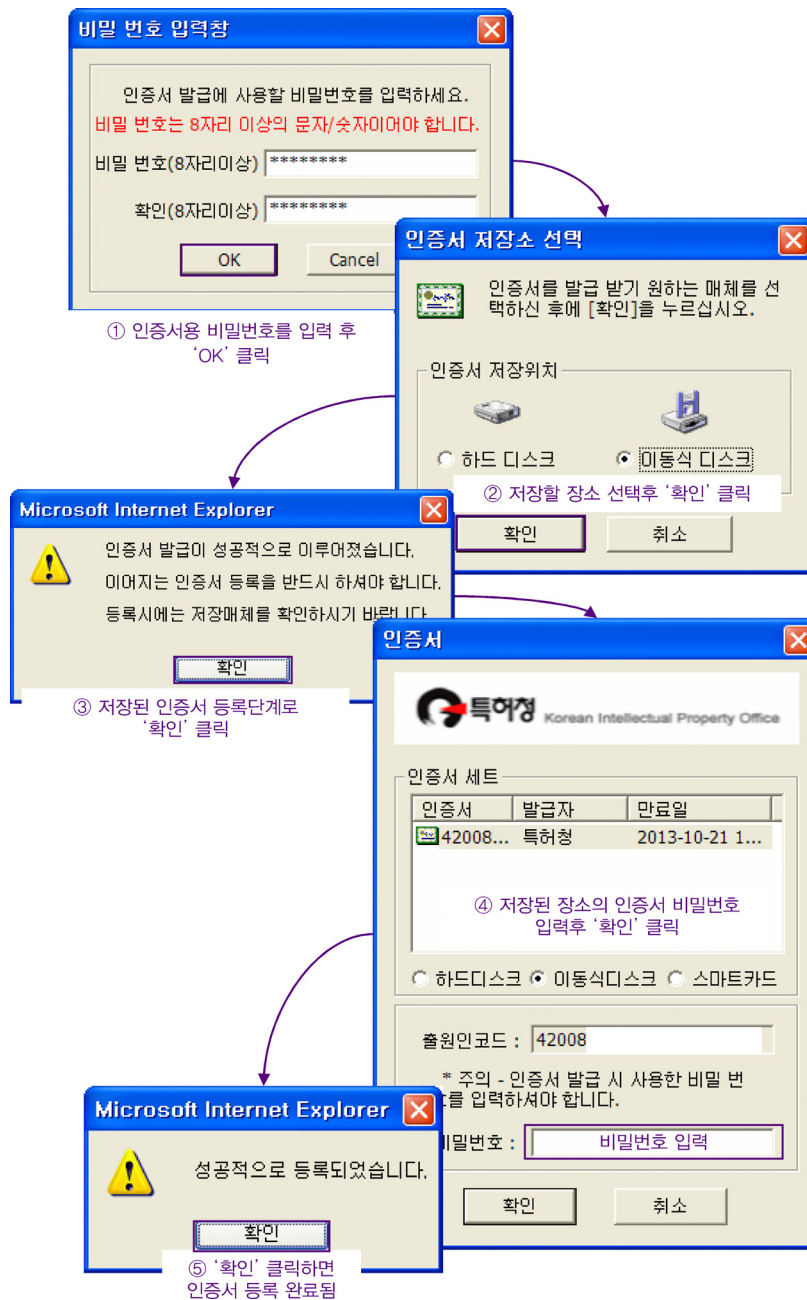
출원인코드 42008 로 로그인하셨습니다.

로그아웃 >

[인증서 폐지와 등록취소 주의사항]

	발급	유효기간연장	폐지	등록취소	인증서관리
특허청 인증서	신규로 발급받습니다. 재발급은 '폐지'나 '등록취소'후에만 가능합니다. 인증서 아이디 입력 - [] [아이디 이용하여 발급]	특허청 키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더이상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경우 설치된 인증서를 삭제하고 등록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손실하였거나 인증서 관리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출원인/대리인코드 확인절차를 거쳐 기존에 등록된 인증서를 무효화 시키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고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된 인증서에 대한 관리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특허청인증서의 '발급'을 클릭 후에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b. 공인 인증서

-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특허청인증서를 거쳐 사용합니다.
- ▶ 인증절차는 특허청홈페이지 > 특허로 > 사용자등록신청 > 인증서발급/재발급 > 공인인증서 (특허청인증서 참조)에서 다음 순서에 따라 등록합니다.

공인인증서 [昌인채]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출원인/대리인이 인증서를 **등록 및 등록취소**를 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출원인/대리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인가된 사용자에 대하여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등록' 및 '등록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인등록(출원인코드부여 신청서 제출)"후 얻은 "출원인/대리인코드"와 "전자문서 이용신고"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먼저 로그인하십시오.

비밀번호를 잊으신 경우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다시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수동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설치파일 다운로드]

"출원인코드신청"후 발급받은 출원인/대리인코드 - - -

전자문서이용신고시 입력한 비밀번호

로그인 **다시쓰기**

① 출원인코드와 전자문서이용 신고 시 받은 출원인코드와 입력한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클릭

공인인증서 [昌인채]

출원인코드 **4200** 로 로그인하셨습니다. 로그아웃

공인 인증서	등록	전자서명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인 인증기관인 한국 정보인증(주), 한국 증원전자(주),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주), 한국무역정보통신(주), 한국전자인증(주)에서
	등록취소	인증서를 손실하였거나 인증서 관리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출원인/대리인코드 확인절차를 거쳐 기존에 등록된 인증서를 무효화 되며, 새로운 인증서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관리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된 인증서에 대한 관리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② 공인인증서의 등록 클릭

인증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인증서 세트

인증서	발급자	만료일
인증서 선택		

☒ 하드디스크 ☐ 이동식디스크 ☐ 스마트카드

* 주의 - 로그인 할 신원확인용 인증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비밀번호 :

확인 **취소**

③ 인증서를 찾아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출원인 코드 입력

인증서 등록시 출원인 코드가 필요합니다. 출원인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 주의 : 출원인 코드는 숫자로만 구성됩니다

출원인 코드 :

확인 **취소**

④ 출원인코드 입력 후 '확인'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등록 완료

c. PCT 인증서

- ▶ CD-R에 의한 국제출원서 제출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허청인증서를 변환하거나 WIPO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특허청인증서 변환절차는 특허청홈페이지 > 특허로 > 사용자등록신청 > 인증서발급/재발급 > PCT인증서(특허청인증서 참조)에서 아래의 순서에 따라 변환합니다.

▶ PCT국제출원서제출
로그인

CD-R에 의한 국제출원서 제출시 특허청인증서 또는 WIPO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특허청 인증서

- ▶ 특허청인증서를 아래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변환" 기능을 사용하여 WIPO 규격에 맞게 변환하여 사용합니다.
- ▶ 인증서를 발급 받지 않은 사용자는 "인증센터 > 특허청인증서" 화면에서 특허청인증서를 발급받아 "인증서변환" 한 후 사용하십시오.
- ▶ 특허청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에 변환하여 사용하던 PCT전자출원용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재발급 받은 특허청인증서를 "인증서변환" 한 후 사용하십시오.

※ 인증서 변환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보안설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야 합니다.

- 1)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도구→인터넷옵션→보안] 메뉴 선택
- 2) [인터넷] 영역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 수준] 버튼 선택
- 3)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ActiveX 컨트롤 초기화 및 스크립트] 항목을 [확인]으로 설정

인증서 변환 ▶

이용안내 ▶

① 인증서 변환 클릭

▶ WIPO 인증서

- ▶ WIPO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발급 받아 전자서명
- ▶ <http://www.wipo.int/pct-safe/en/certificates.htm>에서 발급 가능
- ▶ 변환된 국제출원용 특허청인증서 사용 권장

키/인증서 변환

특허청에서 발급받아 등록하신 인증서 목록입니다. 국제출원용으로 변환하시려면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변환]버튼을 누르십시오.

사용자 ID	패스워드	상태정보
CN=420080275266(kipo)0810...	[*****]	미변환

② 특허청인증서를 찾아 패스워드 입력

완료

인증서 변환 요청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상태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④ '확인' 클릭

변환완료된 인증서는 자동변환되지 않습니다. 재변환하시려면 다음의 위치에서 해당파일을 삭제하시고 다시 변환하시기 바랍니다.

* 하드 디스크 : C:\Program Files\WEPS\WPCTSAFE

* 이동식디스크 : [Disk Drive]\WEPS\WPCTSAFE

저장매체 선택

C: 하드 디스크
이동식 디스크

변환

목록경신

종료

③ '변환' 클릭

3 특허 등 출원절차 안내

1) 웹출원(WEB-PASS)을 이용한 출원

① 웹출원(WEB-PASS)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 출원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간편한 온라인 출원서비스로 **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로 > 출원등록 > 출원신청 > WEB-PASS >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전자문서작성기(명세서작성프로그램)가 필요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입력기가 필요합니다.

주소(D) http://www.kipo.go.kr

Home Sitemap English RSS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고객광장 정보광장 정책광장 특허청소

청장소개 일반현황 홍보관 조직소개 직원검색 찾아오시는길

지식재산부국 코리아

특허로
온라인출원 서비스

주소(D)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kipo.html,HtmlApp&c=3106&catmenu=apply0305

특허로

출원에서 등록까지 사용자등록신청 출원·등록 제정명발급 수수료관리 고객지원 나의출원등록조회 고충민원창구 특허청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모바일연락처 출원신청서 제출결과조회 통지서수신 국유특허 기탁미생물 코드/분류 조회

HOME / 출원·등록 / 출원신청 / WEB-PASS(웹출원)

출원·등록

특허청에서 출원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본인의 사용자 식별코드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전자출원을 이용하기 위해 신청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전자문서 이용신고 이후 온라인 출원 및 전자문서 교환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 또는 등록합니다.

WEB-PASS(웹출원) (인증서로그인)

홈페이지 상에서 서식을 작성하여 특허청으로 제출합니다.

WEB-PASS(웹출원) 절차 안내

WEB-PASS(웹출원) (인증서로그인) → 서식선택 → 서식작성 → 미리보기 → 온라인제출

홈페이지 상에서 서식을 작성하여 특허청으로 제출합니다.

원하는 서식을 선택하고, 서식에 따른 추가입력항목을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서식을 작성하고 명세서(도면) 또는 상표견본을 첨부하는 절차입니다.

작성된 서식의 오류를 체크하고 표준문서로 생성하는 절차입니다.

생성된 표준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제출결과를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인증서

인증서 세트

인증서 발급자 만료일

출원인코드

확인 취소

③ 인증서를 찾아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② 로그인 후 WEB-PASS(웹출원) 절차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③ 활성화 된 WEB-PASS 화면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행안내창 : 제출서식의 진행순서를 시각적으로 안내
- 서식설명창 : 서식선택시 해당서식에 대한 내용 안내
- 민원서식 :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를 선택하면 해당서식 활성화되며, 현재는 일부 서식만 제공

- 출 원 서 : 특허출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상표등록출원서 등 출원 시 제출서류로 구성
- 중간서류 : 보정서, 기간연장신청서, 의견(답변, 소명)서 등 출원절차 중 제출 되는 서류로 구성
- 납 부 서 : 설정 특허등록료,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등 수수료 관련 서류로 구성

※ 현재 WEB-PASS를 통한 민원서식은 한정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추가서류를 탑재중에 있습니다.



- ④ WEB-PASS에서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으며, 기재요령에 따라 출원 서류를 작성합니다.
- 특허청 홈페이지>특허로>출원등록>출원신청>WEB-PASS>인증서 로그인
 - 출원서식 선택 후 웹출원서의 구분항목 선택시 팝업창을 통한 기재요령 안내
 - 또는 웹출원서 우측상단의 기재요령 첨부파일 선택하여 확인 가능



⑤ WEB-PASS를 통한 온라인검증 및 문서 제출

- 기재요령에 따라 해당서식을 작성 후 입력을 클릭하면 작성된 서류가 나타나며,
- 서류 하단의 '온라인검증'을 클릭하면 오류 검증결과가 출력되며 검증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 '온라인제출'을 클릭합니다.
- '온라인제출'을 클릭시 온라인 인증후에 서류가 특허청에 제출됩니다.
- 온라인 수수료 납부방법은 전자출원 S/W를 통한 출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EB-PASS(웹출원) 서비스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WEB-PASS(웹출원)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01 서식선택 > 02 서식작성 > 03 **미리보기** > 04 온라인제출

특허출원서

인쇄

【참조번호】 0001
【출원구분】 특허출원
【출원인】
【성명】
【출원인코드】 4-2008- -6
【발명의 국문명칭】 연습
【발명의 영문명칭】 Example
【발명자】
【성명】
【출원인코드】 4-2008- -6
【심사청구】 청구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
【수수료】 (인)
【기본출원료】 0 면 38,000 원
【가산출원료】 4 면 0 원
【우선권주장료】 0 건 0 원
【심사청구료】 1 항 141,000 원
【합계】 179,000 원
【발명사유】
【발명사유】
【발명사유】
개인(70%감면)
【발명사유】 53,700 원
【발명사유】

※ '09년 1월부터 대리인 없는 출원인은 온라인 검증시 원격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p 57 참조)

① 온라인 검증 후 하제하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온라인검증' 클릭시 검증결과 안내
③ 온라인 제출시 인증 후 제출

온라인검증 문서수정 온라인제출

WEB-PASS(웹출원) 서비스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WEB-PASS(웹출원)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01 서식선택 > 02 서식작성 > 03 **미리보기** > 04 온라인제출

특허출원서

인쇄

【참조번호】 0001
【출원구분】 특허출원
【출원인】
【성명】
【출원인코드】 4-2008- -6
【발명의 국문명칭】 연습
【발명의 영문명칭】 Example
【발명자】
【성명】
【출원인코드】 4-2008- -6
【심사청구】 청구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
【수수료】 (인)
【기본출원료】 0 면 38,000 원
【가산출원료】 4 면 0 원
【우선권주장료】 0 건 0 원
【심사청구료】 1 항 141,000 원
【합계】 179,000 원
【발명사유】
【발명사유】
【발명사유】
개인(70%감면)
【발명사유】 53,700 원
【발명사유】

① 해당서식 작성후
'입력/확인' 클릭

WEB-PASS(웹출원) 서비스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WEB-PASS(웹출원)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01 서식선택 > 02 서식작성 > 03 **미리보기** > 04 온라인제출

특허출원서

인쇄

【참조번호】 0001
【출원구분】 특허출원
【출원인】
【성명】
【출원인코드】 4-2008- -6
【발명의 국문명칭】 연습
【발명의 영문명칭】 Example
【발명자】
【성명】
【출원인코드】 4-2008- -6
【심사청구】 청구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
【수수료】 (인)
【기본출원료】 0 면 38,000 원
【가산출원료】 4 면 0 원
【우선권주장료】 0 건 0 원
【심사청구료】 1 항 141,000 원
【합계】 179,000 원
【발명사유】
【발명사유】
【발명사유】
개인(70%감면)
【발명사유】 53,700 원
【발명사유】

온라인검증 문서수정 온라인제출

온라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후
온라인 제출

2) 전자출원S/W(서식작성기)를 이용한 출원

① 전자출원S/W 안내

a. 프로그램 설치안내

- ▶ 프로그램 위치 : 특허청>특허로>출원등록>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 전체설치 : 전자출원에 필요한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합설치
- ▶ 사용자설치 :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선택하여 설치
- ▶ 프로그램 매뉴얼 : 사용자설치에서 각 프로그램별 사용 매뉴얼 제공

주소(D)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kiporo.BoardApp

특허로 HOME | SITEMAP

출원에서 등록까지 사용자등록신청 출원·등록 제증명발급 수수료관리 고객지원 나의출원등록조회 특허청 고충민원창구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모의전자출원 출원신청 제출결과조회 통지서수신 국유특허 기탁미생물 코드/분류 조회

▶ 전체 설치

통합 설치	권리구분	S/W 다운로드	비고
전자출원에 필요한 전용 S/W를 일괄(통합) 설치합니다. 통합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경우에는 아래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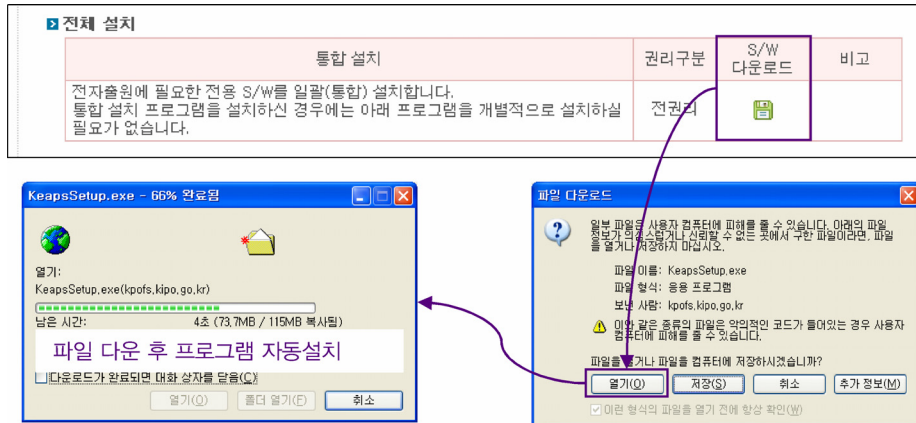
▶ 사용자 설치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전자출원S/W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b. 전자출원S/W의 기능별 종류 및 용도

프로그램명	설 명	권리구분
서식작성기 (Keaps)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서 및 중간절차(의견서 등)와 등록과 심판절차 등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고 특허청에 제출하는 전자출원 S/W입니다. ※ 전자문서작성기로 명세서, 보정서 등을 작성,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자문서작성기 (K-Editor)	특허, 디자인 출원의 명세서 및 보정서, 의견서 등 전자출원에 앞서 서식에 첨부되는 각종 문서를 작성하는 워드 프로세스형 전자출원 S/W입니다.	
첨부서류입력기	출원서, 보정서 등 서식 제출시 위임장, 증명서 등을 스캔 및 변환하여 서식에 손쉽게 첨부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전자출원S/W입니다.	
통지서 열람기	특허청에서 온라인으로 발송한 통지서 및 제증명 서류를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는 전자출원S/W입니다.	
서열목록작성기 (KOPATENTIN)	생명공학 관련 특허출원시 서열목록을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전자출원 S/W입니다.	특허
PATENTIN	생명공학 관련 특허출원시 서열목록을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전자출원 S/W입니다. ※ 대용량의 서열목록 작성시 사용하십시오.	특허
MM서식작성기	상표출원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본국관청 제출서류 중 WIPO에 제출하는 국제상표 출원서류를 작성하는 전자출원S/W입니다.	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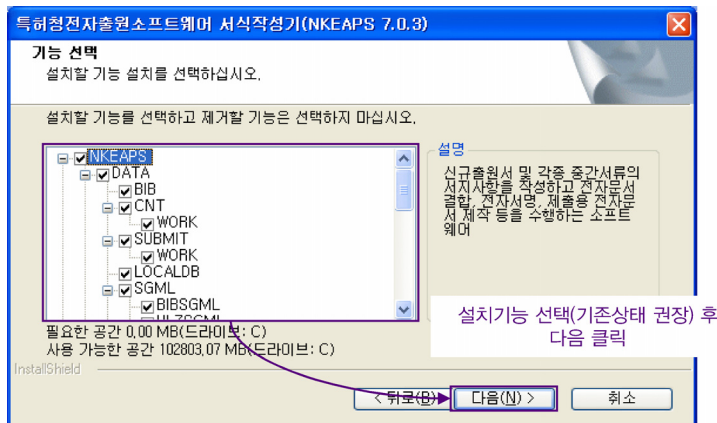
② 프로그램 설치(전체설치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a. 해당 프로그램의 S/W다운로드>파일다운로드에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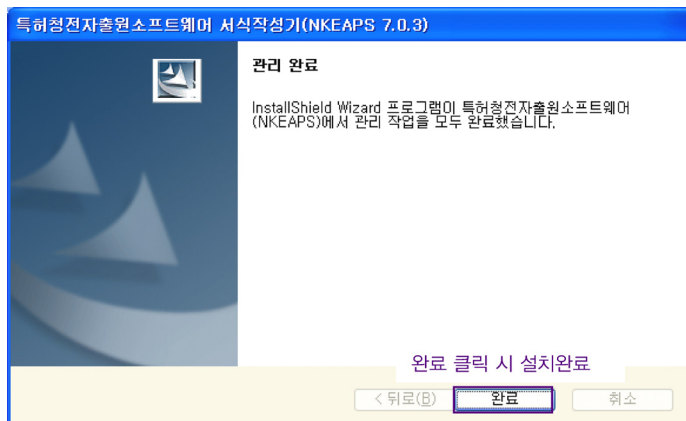


b. 프로그램 다운로드 완료 후 설치할 기능을 묻는 창이 나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 지면관계상 서식작성기 설치방법만을 설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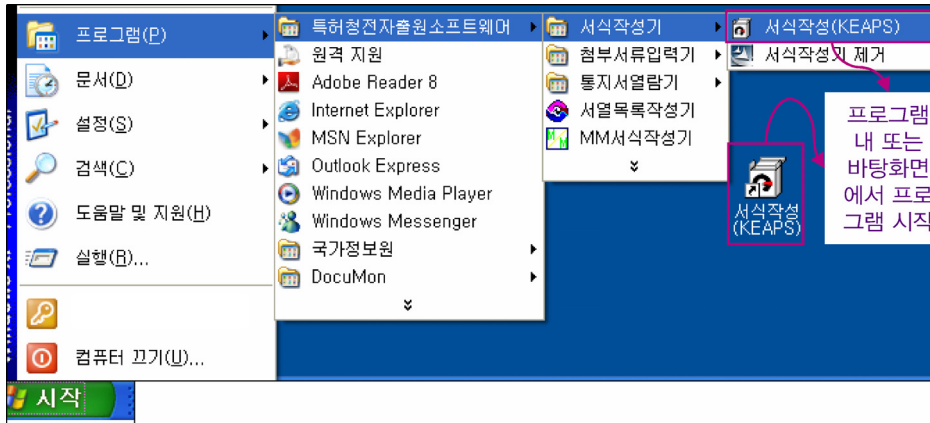


c.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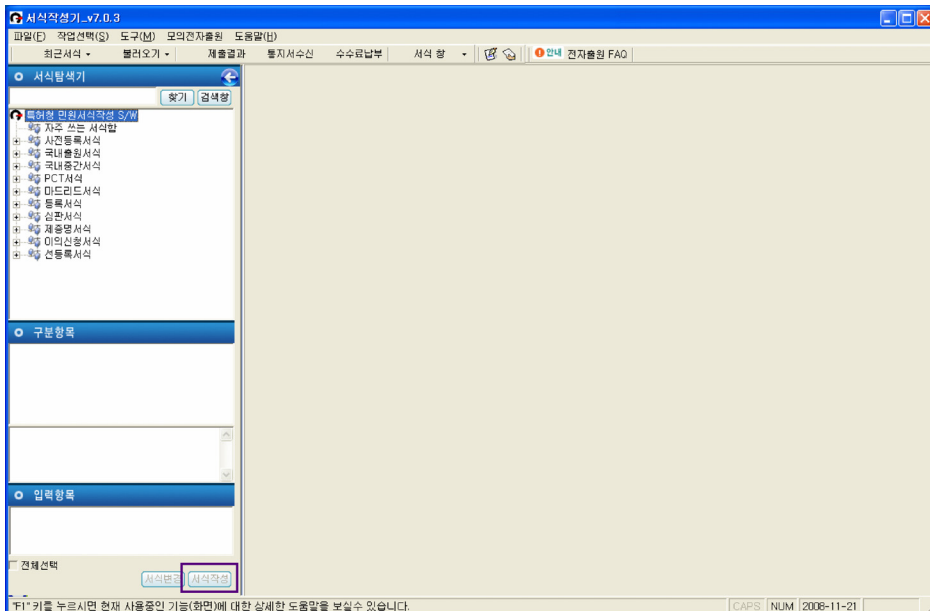


③ 서식작성기 시작

- a. 프로그램이 설치되었으면 바탕화면 내 서식작성 아이콘을 클릭하시거나,
- b. 또는 시작 > 프로그램 > 특허청전자출원소프트웨어 > 서식작성기 > 서식작성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c. 서식작성기가 활성화되면서 업데이트와 함께 다음과 같이 초기화면이 나타나며, 서식탐색기에서 필요서식을 찾아 서식작성을 클릭하면 해당서식이 활성화됩니다.



④ 활성화 된 서식작성기 주요 구성사항

- a. 서식탐색기 : 서류명을 입력하여 '찾기'버튼을 누르거나 트리구조의 서류를 순차적으로 탐색하여 해당서류를 선택하면 해당서식이 활성화됩니다.
 - 사전등록서식 : 위임장, 포괄위임등록 신청(철회)서, 전자문서이용신고서 등
 - 국내출원서식 : 특허출원서, 상표등록출원서, 디자인등록출원서 등
 - 국내중간서식 : 보정서, 취하서 등
 - 이외에도 PCT서식, 마드리드서식, 등록서식, 심판서식, 제증명서식, 이의신청서식, 선등록서식 등의 해당 서류들이 있음
- b. 구분항목 : 서지사항의 출원구분, 권리구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요서식구분을 선택하면 하단에 구분사항의 설명이 기재됩니다.
- c. 입력항목 : 대리인, 우선권주장, 첨부서류입력 등 서류별 선택 입력사항을 통해 필요시 선택하여 서지사항에 반영됩니다.
- d. 문서탭 : 현재 작업중인 문서를 표시합니다.
- e. 오류검색 : 서식작성 내용 오류를 특허청에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합니다.
- f. 전자문서제출 : 서식을 특허청정보와 대조해 오류사항을 검증하고 문서를 제출합니다.
- g. 서지사항 : 출원구분, 권리구분, 출원인, 수수료, 첨부서류 등 항목을 기재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⑥ 특허출원서 서식작성에

a. 서식탐색기에서 특허출원서 작성은 다음 순서와 같습니다.

- ▶ 서식탐색기에서 '특허출원서' 입력 후 해당서식 선택
- ▶ 구분항목에서 출원구분을 선택하고 입력항목 필요시 체크 후에 서식작성 선택
- ▶ 요약서, 명세서(도면)/별지파일을 찾아 입력
- ▶ 명세서에 심사청구항이 있을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안내 팝업창 생성
- ▶ 심사청구안내 팝업창에서 심사청구 선택

1 서식탐색

2 출원서 선택

3 구분항목 선택

4 입력항목 선택

5 서식작성 클릭시 팝업창 생성

6 명세서첨부 팝업창이 뜨면 전자문서작성기를 통해 작성된 명세서가 있는 경우 찾아서 입력

7 입력된 명세서에 심사청구항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팝업창이 생성되며 '예' 클릭

8 출원인 항목의 '입력'항 클릭 후 입력

9 발명자 국문 및 영문명칭 입력

10 발명자 항목의 '입력'항 클릭 후 입력

11 해당 기타 사항 선택

12 수수료 '면제감면대상' 선택

13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 서류입력' 클릭 후 입력

14 오류 선택

15 전자문서 제출

b. 출원서 항목 별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인 항목의 입력방법

출원인 정보 ① 출원인코드 여부 선택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출원인코드 4 - 2008 - 123456 - 6

성명 홍길동

지분 /100

출원인대표자

입력

입력과 사용자DB에 저장

입력된 출원인 정보

순번	성명(영칭)	출원인코드	주소
1	홍길동	4-2008-123456-6	

사용자 DB 정보

순번	성명(영칭)	출원인코드	주소
3	엑스퍼트(우)	1-2008-123456-1	
4	홍길동	4-2008-123456-6	

※ '입력과 사용자DB에 저장' 클릭시 하단의 사용자DB에 저장됨

- ▶ 발명의 국문명칭과 영문명칭은 첨부된 명세서 내용에서 자동 입력됨
- ▶ 발명자 항목의 입력란 선택 후 생성된 팝업창 순서에 따라 입력

발명자 정보 ① 출원인코드 여부 선택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출원인 코드 4 - 2008 - 123456 - 6

발명자 성명 홍길동

발명자

출원인코드와 성명 등 입력 후 "입력" 클릭

발명자(고안자, 창작자)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발명자(고안자, 창작자)의 경우에는 상세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출원인과 동일

입력

입력과 사용자DB에 저장

입력된 발명자 정보

순번	국문성명	출원인코드	주소
1	홍길동	4-2008-123456-6	

사용자 DB 정보

순번	국문성명	출원인코드	주소
2	김재민	4-2008-027626-6	
3	홍길동	4-2008-123456-6	

※ '입력과 사용자DB에 저장' 클릭시 하단의 사용자DB에 저장됨

▶ 기타사항 항목에서 필요항목 체크(심사청구는 명세서 첨부시 자동선택)

기타사항

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조기공개신청 공지에외적용

미생물기탁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 ▶ 수수료항목에서 면제감면대상인 경우 순서에 따라 입력(예 : 학생감면)

면제인(FD)	서면	요금표
전체면수	4 면	38,000 원
청구항수	1 항	141,000 원
추정건수	0 건	0 원
		179,000 원
		면제감면대상

① '면제감면대상' 클릭

면제인(FD)	서면	요금표
전체면수	4 면	38,000 원
청구항수	1 항	141,000 원
추정건수	0 건	0 원
		179,000 원
		면제감면대상
		학생

③ 학생감면으로 변경

수수료 면제/감면대상자 안내

수수료 면제/감면 유형

☒ 수수료 면제 ☐ 수수료 감면

수수료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등예우증지원에관한법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5·18민주공화국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공화국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
-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재학생(다만, 대학원의 재학생은 제외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재학생(다만, 국가
-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

② 학생감면으로 선택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입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5·18민주공화국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공화국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
-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재학생(다만, 대학원의 재학생을 제외한다)
-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의 재학생
-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

주의) 수수료 감면/면제와 관련된 증명서류 및 선택한 감면대상 서류는 불히 첨부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감면(면제)시 증명서류 제출 유의 사항

확인 취소

※ 수수료 감면 및 수수료 내역은 특허청 > 특허로 > 출원에서등록까지 > 수수료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서류 입력시 '입력'란 선택 후 활성화된 창에서 재학증명서 첨부

첨부서류 정보

① '첨부서류입력' 클릭

② 재학증명서 선택

③ 첨부서류파일 선택

④ '입력' 클릭

⑤ '닫기' 클릭

첨부서류입력

첨부서류파일

첨부서류선택

재학증명서

첨부서류파일

C:\WDocuments and Settings\W정보관리\W바탕 화면\W파일

보통사한

원장사한

[서류명]

입력

닫기

첨부서류 파일 보기

찾는 위치(D):

내 최근 문서

내 문서

내 컴퓨터

내 네트워크 위치

파일 이름(E):

파일 형식(F):

재학증명서 .h

첨부서류(*.h)

열기(O)

취소

첨부서류 정보

서류명

통수

원장사한

파일경로

W정보관리\W바탕 화면

첨부서류 정보

서류명

통수

원장사한

파일경로

W정보관리\W바탕 화면

첨부서류 정보

서류명

통수

원장사한

파일경로

W정보관리\W바탕 화면

- 위의 모든 과정을 거쳐 특허출원서류가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2008-10-29 | 제출일자 | 저장 | 다른이름으로 | 닫기 | 입력항목변경 | 미리보기 | 서면출력 | 전자문서제출 | 오류검색

특허출원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참조번호

출원구분 ☒ 특허출원 ☐ 분할출원 ☐ 변경출원 ☐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출원인

순번	성명 / 명칭	출원인코드	주 소
1	홍길동	4-2008-123456-6	

발명의 국문명칭

발명의 영문명칭

발명자

순번	성 명	출원인 코드	주 소
1	홍길동	4-2008-123456-6	

기타사항 ☒ 심사청구 ☐ 심사유예신청 ☐ 초기공개신청 ☐ 공지예외적용
☐ 미생물기탁 ☐ 서열목록 ☐ 기술이전희망 ☐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사청구

수수료 ☒ 온라인(FD) ☐ 서 면

출원료	전체면수	4 면	38,000 원
심사청구료	청구항수	1 항	141,000 원
우선권주장료	주장건수	0 건	0 원
합계			179,000 원
면제사유	학생		면제감면대상
면제 후 수수료			0 원

요약서, 명세서(도면) 또는 별지 1통

첨부서류

순번	첨부서류명	통수	원용 사항	첨부서류파일
1	재학증명서	1		재학증명서.att

- c. 서류의 특허청 제출 전 오류검증을 하여 사전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합니다.

- 서식작성기 우측 상단의 오류검색을 클릭하면 출원서를 저장하라는 팝업이 나오며, 서류를 저장하면 작성내용이 올바른지 오류내용을 알려줍니다.

출원서파일 - 저장하기

저장 위치(D): B:\B

내 최근 문서

내 문서

내 컴퓨터

내 네트워크 환경

파일 이름(N): 특허출원서 |

파일 형식(T): 서식파일(*.BIB)

② 문서 '저장' 클릭

① '오류검색' 클릭

③ 오프라인 오류검증 시 이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오류사항 발생시 서류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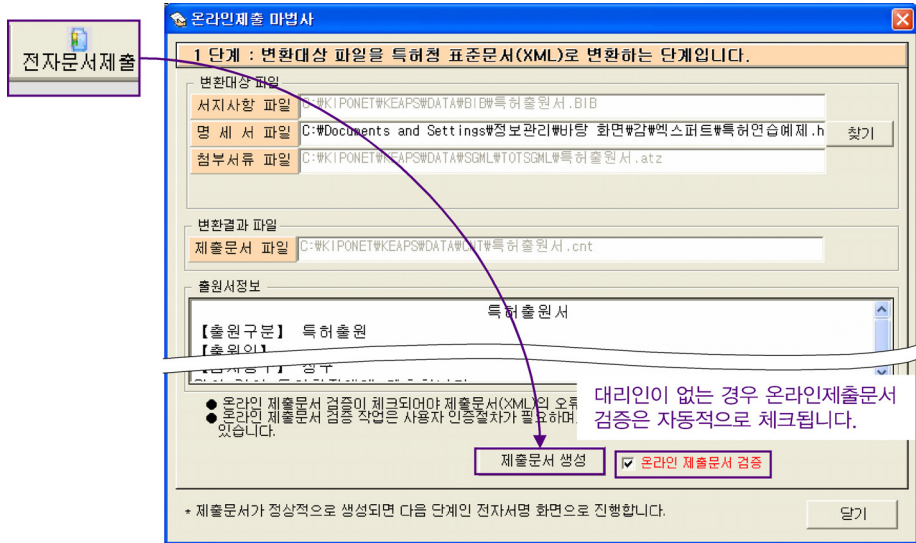
오류검색

서식작성기

서식사항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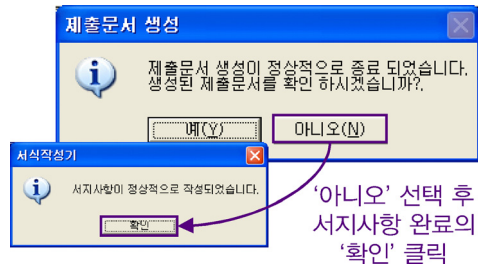
d. 사전 오류검증된 제출문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 ▶ 서식작성기 우측 상단의 전자문서제출을 클릭하면 특허청표준문서(XML)로 변환되며, 제출문서의 온라인제출문서 검증을 선택(개인출원은 자동선택) 후 제출문서 생성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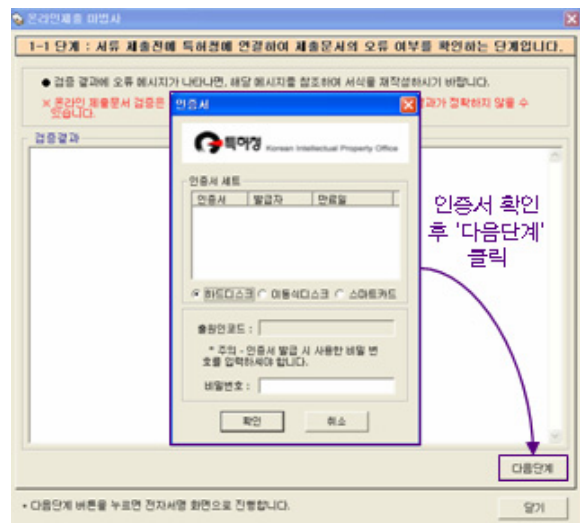
- ▶ 제출문서가 정상적으로 생성되면 생성된 제출문서의 확인을 묻습니다. '아니오'를 선택하여 확인하지 않습니다.

※ '예'를 선택하면 제출문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인증서를 선택후 서류제출전에 특허청 전산에 연결하여 제출 문서의 오류여부를 확인 합니다.

※ 특허청의 전산을 통한 오류검증은 출원인정보나 출원서류 정보 등 사전검증에서 검증되지 않은 오류를 전산과 대조하여 검증합니다.



- ▶ 특허청 전산내용과 제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오류검증결과가 나타납니다. 해당출원서는 오류검증결과 정상이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오류사항을 수정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단계 : 서류 제출전에 특허청에 연결하여 제출문서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검증 결과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 해당 메시지를 참조하여 서식을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제출문서 검증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전 방식검사로 검증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증결과

검증 결과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 해당 메시지를 참조하여 서식을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제출문서 검증은 전산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전 방식검사로 검증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류번호	제출문서의 오류대부 확인 결과
검증결과	접수불가항목 존재
검증항목 및 결과설명	【출원인】 【출원번호】 ~ 등록정보와 불일치 접수문서의 출원인/대리인/법정대리인이 동일하지 않음
문서기재사항	온라인 서류제출자 ID - 420080275266
안내사항	접수불가항목이 존재하여 접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수정 후 제출바랍니다.

인쇄

다음단계

• 다음단계 버튼을 누르면 전자서명 화면으로 진행합니다.

닫기

- ▶ 전자서명 확인 단계로 인증서를 확인 후 서명을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2 단계 : 각 출원인/대리인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파일정보

서명대상 파일명 C:\KIPONET\WKEAPS\DATA\WCONT\특허 출원서 .cnt

서명정보

서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인증서

인증서 세트

인증서 발급자 만료일

출원인코드 : 4200802752

* 주의 - 인증서 발급 시 사용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비밀번호 :

확인 취소

출원인코드인증 후 '서명'클릭 후 '다음 단계' 클릭

다음단계

• 다음단계 버튼을 누르면 특허청에 제출하기 위한 파일의 중복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 ▶ 동일문서가 중복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중복제출로 조회된 경우에는 이전에 동일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단계 : 서류 제출전에 제출문서의 중복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단계는 선택사항입니다

● 이 작업을 통해 온라인 제출 이전에 제출문서의 중복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결과에 중복제출 여부 메시지가 나타나면, 해당 메시지를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작업을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온라인 제출을 하려면 [다음단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중복제출 여부 확인

중복제출 여부 조회 결과

• [제출자], [발명의 명칭], [제출 서류 코드]가 동일하고 접수일자가 [오늘]인 데이터가 이미 있을 경우 [중복제출]로 표시됩니다. (없을 경우에는 아무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 제출하시려는 서류에 [중복제출]이 있을 경우 접수하시기가 전에 다시 한번 이미 접수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출원번호	서명명	명칭	중복대부
1		특허출원서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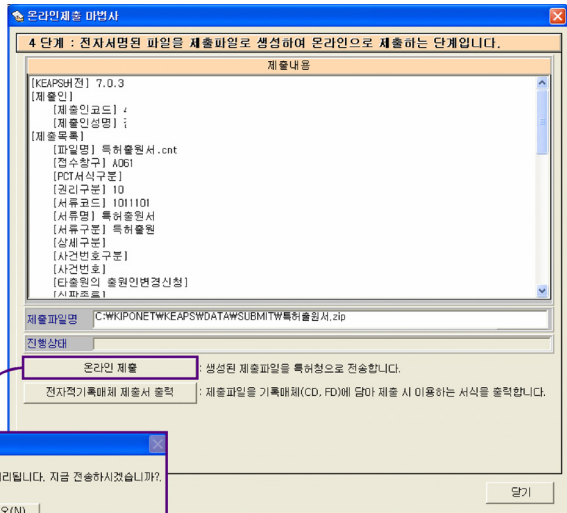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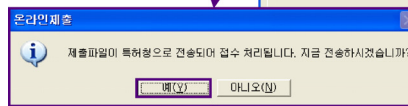
'중복제출여부확인'을 선택하면 동일 서류가 중복 제출되었는지 안내합니다. 중복제출되지 않았다면 '다음단계' 클릭

다음단계

• 다음단계 버튼을 누르면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한 최종파일(ZIP)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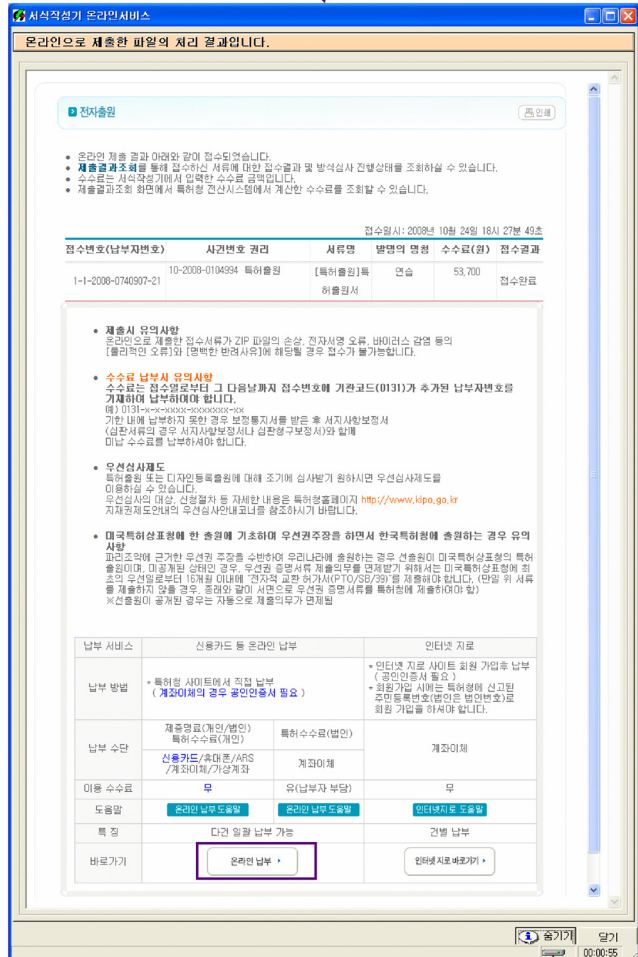
닫기

- 전자서명 파일을 특허청에 제출하려면 '온라인제출'을 클릭합니다.
온라인제출팝업창이 뜨면 '예'를 선택합니다.



e. 온라인을 이용한 수수료 납부

- 전자출원 접수후에는 접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수료 납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지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 온라인제출파일 처리결과창에서 ‘온라인 납부’를 클릭하면 해당출원인의 납부 대상 출원권이 조회가 되며 납부할 서류를 선택 후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다건 일괄 납부 가능

온라인 납부 ▶

특허수수료제증명 포함 납부

출원인/대리인코드 420 로 로그인하셨습니다.

특허수수료(제증명수수료 포함)에 대한 온라인 납부를 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납부대상 검색 ☐ 제증명 ☒ 특허수수료 ☐ 연차등록료

선택	접수번호	출원(등록)번호	접수일자	금액	납부사유(서류명)	납부기한
☒	112008074090721	1020080104994	2008.10.24	53,700	[특허출원]특허출원서	2008.10.27

여러 결제방법 중 신용카드로 납부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결제할 방법을 선택하세요 ☒ 신용카드 ☐ 계좌이체 ☐ 휴대폰 ☐ ARS ☐ 가상계

특허 수수료 : 53,700원
비용 수수료 : 0원
결제 금액 : 53,700원

결제하기 ▶

금액확인

- ▶ 이후 수수료 납부는 일반적인 수수료 납부방법과 같습니다.

특허청

카드선택/인증 → 정보확인 → 결제완료

신용카드 - 카드선택/인증

상품명 112008074090721등1건
상품금액 53,700 원

고객님께서 결제에 사용할 카드를 선택해 주십시오.

비씨카드 ☐ 국민카드 ☐ 현대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우리카드 ☐ 저축은행 ☐ 외환카드 ☐

이 외의 카드는 이곳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무이자할부 카드 안내

공인인증제도
'05년11월부터 의무시행

다음 취소

INICIS 6.0 RSA1024bit, SEED-CBC128bit, 키보드로보안으로 안전합니다.

[illegible]

⑥ 해당사건이 공개된 건일 경우 ‘사건의 표시 찾기’ 클릭하여 입력하고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창을 닫음

1-1 단계 : 서울 서울전체 특화현황 조사하여 서울준문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검열 결과에 오류 메시지(1)나(1)(1), 해당 메시지(1)를 참조하여 서식을 확인하십시오.** (1)입니다.

※ **문서(1)를 발송하면 검열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전 방화벽검사, 검증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열 결과에 오류 메시지(1)나(1)(1), 해당 메시지(1)를 참조하여 서식을 확인하십시오. (1)입니다.

※ **문서(1)를 발송하면 검열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전 방화벽검사, 검증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번	서울준문의 오류내용 확인 결과	처리
1	검열결과 검열 범위 검열대상 【전문의 표시】 【종류명】 - 전문의 표시 (1)나(1)(1) 문서명 【전문의 표시】 【종류명】 【문서명】 【문서명】 발사시간 【전문의 표시】 【종류명】 【문서명】 【문서명】	연번 【전문의 표시】 【종류명】 - 전문의 표시 (1)나(1)(1) 문서명 【전문의 표시】 【종류명】 【문서명】 【문서명】 발사시간 【전문의 표시】 【종류명】 【문서명】 【문서명】

인쇄

다음단계

2

전자출입

프린트

- 온라인 제출 가능 여부와 같이 접수됩니다.
- 접수결과를 접수 접수인 시점에 대입 접수결과 및 발급사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실적작성까지에 입력한 수수료 금액입니다.
- 제출결과조회 화면에서 특허한 건진진소접에서 계산한 수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 2008081901 2451 2451 02호

접수번호 (납부자료번호)	사건번호 관리	사유명	발생의 형식	수수료액 (원)	접수결과
10-2008-0104394 특허출원		[특허 통 결자 허위] 허위(포 가)서		0	접수완료
1-1-2008-07045971-33					

-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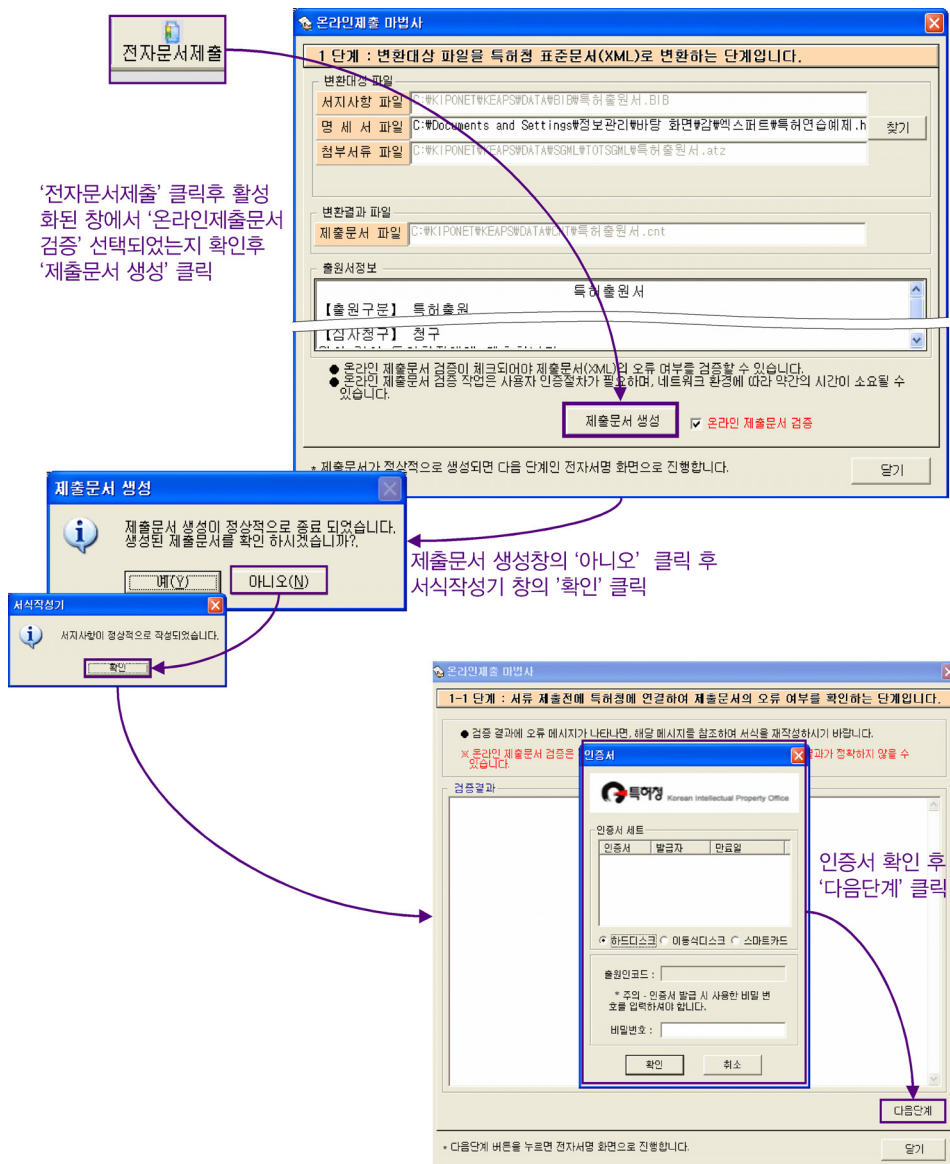
납부 서비스	신용카드 등 온라인 납부	인터넷 자료
납부 방법	* 특히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납부 (계좌입금의 경우 영문입금 필수)	* 인터넷 자료 사이트 회원가입 납부 (공인인증 필요) * 해외입금 시에는 계좌해제 신고된 주민등록번호(본인)를 본인번호로 회원 가입을 하십시오.
납부 수단	제출영수증(계좌/현금) 특히 수취영수증(계좌) 신용카드/휴대폰/ARS /계좌입금/온라인 납부	특히 수취영수증(본인) 계좌이체
이체 수수료	무	무
도움말	온라인 납부 도움말	인터넷 자료 도움말
특 징	다건 일괄 납부 가능	간편 납부
바라보기	온라인 납부 *	인터넷 자료 서비스하기 *

⑧ '09년 1월 운영 예정인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 안내

a.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은 콜센터 전문가가 출원고객이 전자출원시 발생한 오류정보를 원격지에서 공유하면서 서식작성을 상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 ▶ 출원인이 전자출원프로그램의 오류검증기능으로 검출된 오류에 대해 온라인으로 상담요청시 상담번호가 부여되고, 이 상담번호로 콜센터에 전화접속을 하면
- ▶ 콜센터 전문가는 콜센터 모니터로 출원인과 동일한 오류 관련정보를 보면서 서식작성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b.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p52에 기술된 '전자문서제출' 항목 참고)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 원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안내사항이 활성화되며 '상담요청' 클릭시 상담번호가 부여되며 웹출원의 '온라인검증'시에도 동일한 원격 상담 안내사항이 활성화 됨

온라인제출 마법사

1-1 단계 : 서류 제출전에 특허청에 연결하여 제출문서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검증 결과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 해당 메시지를 참조하여 서식을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제출문서 검증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전 방식심사로 검증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증결과

알림번호	제출문서의 오류여부 확인 결과
1	검증결과 : 보장대상항목 존재 【무선권 주장】 【출원번호】 - 등록정보와 불일치 출원인이 원출원의 출원인이 아님 문서 기재 사항 : 출원인(4-2008-027526-6), 무선권 주장(10-2008-0005223) 안내 사항 : 보장대상인 항목이 존재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보장요구서가 발송됩니다.
2	검증결과 : 반려대상항목 존재 【고안의 상세한 설명】 【개술분야】 - 내용 기재 오류 문서 기재 사항 : 복 개항목

※ 상담자가 작성서류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오류여부 확인 결과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자가 작성서류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담 요청**

※ 작성서류에 대한 상담사 열람에 동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 명세서, 도면 및 견본은 정보보호를 위해서 상담원 열람이 제한되며 상담시간은 평일 09시~19시, 토요일 09시~13시까지입니다.)

다음단계 > 닫기

온라인제출 마법사

고객님의 상담번호는 0000000번 입니다.

1544-8080으로 전화 후 8번을 누르신 후 상담번호를 입력하시고 #를 누르시면 해당오류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44-8080 → 8 + 0000000 + # → 상담)

닫기

'상담요청' 클릭시 자동으로 상담번호가 부여되며 순서에 따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전문가에게 오류정보가 전달되어 내용설명없이 바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홈페이지 민원서식을 이용한 출원

- ① 홈페이지(www.kipo.go.kr) 내 민원서식은 서면출원시 필요한 서류이며
- ② 홈페이지 내 민원서식에서 내려 받으시거나 특허로 > 출원에서등록까지 > 출원 신청 > 민원서식안내 > 민원서식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민원서식다운로드클릭

② 민원서식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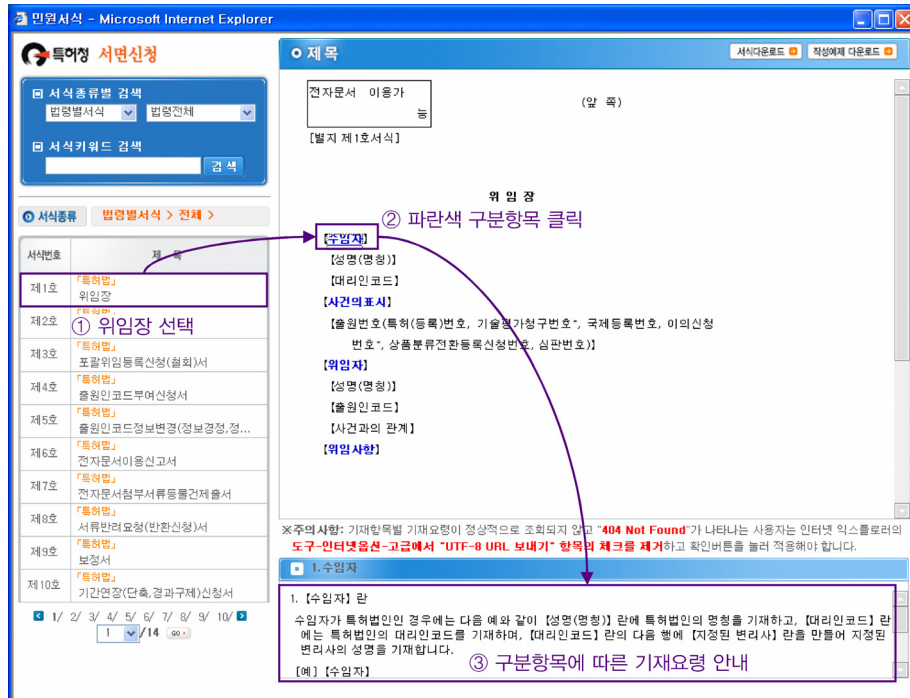
- 서식 종류별 검색 : 분야별 서식 검색, 법령별 서식 검색, 서식번호 검색 제공
- 서식 키워드 검색 : 서식명의 키워드에 대한 검색 제공
- 서식 실시간 열람 : 서식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서식을 열람
- 대항목별 기재요령 조회 : 열람 서식의 대항목별 기재요령 실시간 조회
- 서식 다운로드 : 서식의 전체 기재요령을 다운로드
- 서식 작성예제 다운로드 : 주요 서식에 대한 작성예제를 다운로드

민원서식

모범명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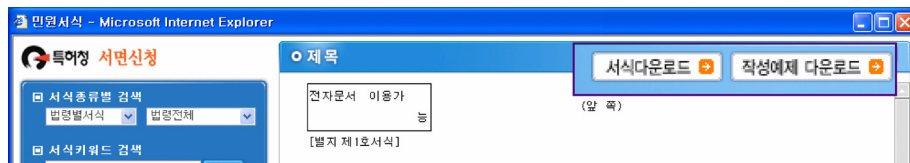
④ 민원서식 기재요령

- a.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제공되는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서식의 파란색 구분항목을 선택하면 아래 하단에 기재요령이 안내됩니다.



b. 서면신청서에 제공되는 기재요령 확인

- ▶ 민원서식창에서 해당서식을 선택 후 우측상단의 '서식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서식과 함께 뒷면에 구분항목별 기재요령이 안내되어 있으며,
- ▶ '작성예제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해당서식의 모범작성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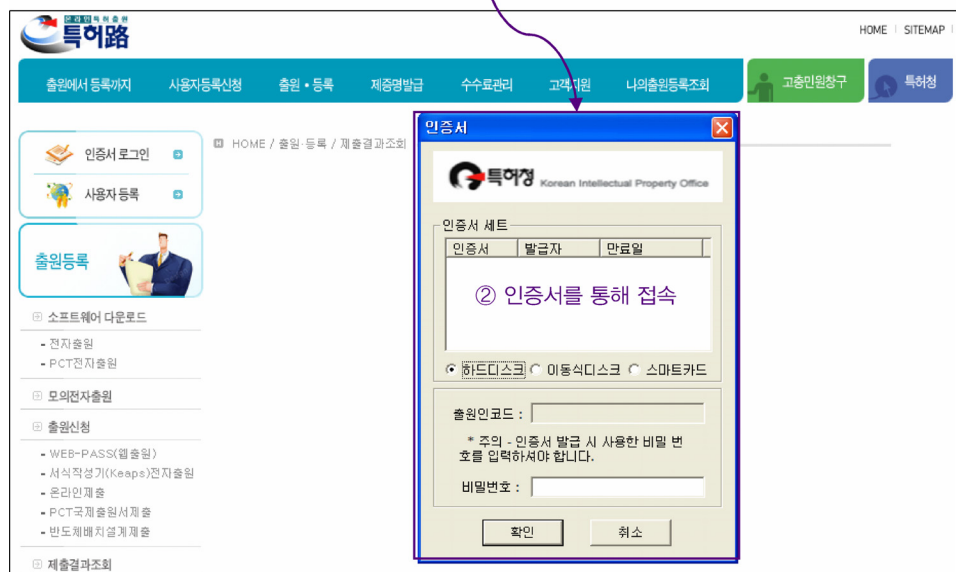
⑤ 작성서류 서면 제출

- a. 작성된 서류는 첨부서류와 수수료(우편환 이용)를 동봉하여 특허청으로 발송하시거나 특허청 고객센터(대전)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제출하실 수 있으며
- b. 우편 발송시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4동(우편번호 302-701)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특허청콜센터 : 1544-8080(발명발명)

4) 출원서류 제출결과 조회

- ①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행사항과 제출된 서류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② 특허청 > 특허로 > 출원등록 > 제출결과조회에서 인증서를 통해 접속합니다.



③ 해당 페이지에서 조회할 조건을 입력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선택한 서류에 대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illegible]

4

틀리기 쉬운 서식 기재사항(오답노트)

1) 틀리기 쉬운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 기재사항

- ① 출원구분의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 기재

특허출원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참조번호

출원구분

☒ 특허출원
 ☐ 분할출원
 ☐ 변경출원
 ☒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 a.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자신의 출원을 침해한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로 소급 받을 때 이용하는 서식으로
- b. 출원인이 정당한 권리자이므로 출원구분항목의 '특허출원'을 선택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c.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받아야 하므로 '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기재와 함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심판 등을 통해 무권리자가 권리를 침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10 - -

사건의 표시 찾기

- ② 발명자(고안자, 창작자)에 법인 등을 기재

발명자

순번	성명	출원인 코드	주소
1	홍길동	4-2008-123456-6	

입력

- a. 발명자(고안자, 창작자)는 자연인으로서 법인 등은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b. 출원인의 코드번호가 있는 경우에 서식작성기나 웹출원에서는 자연인에게 부여된 코드(4 또는 6으로 시작되는 코드)이외에는 법인 등을 발명자로 입력할 수 없으나 서면출원시에는 오류검증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c. 코드번호가 없는 경우에 서식작성기나 웹출원에서는 입력사항을 통해 발명자가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확인이 불가능(외국국적일 경우)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 기타사항 주요 오기재 사항

a. 명세서에 심사청구범위 기재 없이 심사청구

- 심사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심사가 주 대상이므로 명세서에 심사청구범위가 기재된 경우에만 심사청구 대상이 되나, 심사청구범위의 기재 없이 심사청구 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유예대상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 심사청구 ☐ 심사유예신청 ☐ 조기공개신청 ☐ 공지예외적용 ☐ 미생물기탁 ☐ 서열목록 ☐ 기술이전희망 ☐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사청구	청구

b. 심사청구항 없이 심사유예신청

- 심사유예신청은 심사청구된 출원서를 심사유예 하는 경우에만 선택해야 하므로 심사청구 없이 심사유예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c. 심사유예신청기간이 42개월 초과

- 유예기간은 심사청구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후부터 42개월까지 유예신청이 가능하나 초과된 개월 수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서면 제출시)

기타사항	☒ 심사청구 ☒ 심사유예신청 ☐ 조기공개신청 ☐ 공지예외적용 ☐ 미생물기탁 ☐ 서열목록 ☐ 기술이전희망 ☐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사청구	청구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42)개월

d. 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 기재 없이 조기공개신청

- 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리확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에 조기공개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타사항	☐ 심사청구 ☐ 심사유예신청 ☒ 조기공개신청 ☐ 공지예외적용 ☐ 미생물기탁 ☐ 서열목록 ☐ 기술이전희망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기공개	신청

e. 공지예외적용대상인 경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미비

- 공지예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내용에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출원서 제출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공지예외적용만 체크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사항	☐ 심사청구 ☐ 심사유예신청 ☐ 조기공개신청 ☒ 공지예외적용 ☐ 미생물기탁 ☐ 서열목록 ☐ 기술이전희망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내용		
순번	공개형태	공개일자
1	간행물 발표	2008.11.19

f. 미생물기탁 사항의 ☐ 에 표시 후 해당내용 및 증명서류 미첨부

- ▶ 미생물기탁의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에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수탁일자 등을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거나 기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g. 서열목록 사항의 ☐ 에 표시 후 해당내용 및 증명서류 미첨부

- ▶ 서열목록의 경우에는 서열개수 및 서열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 심사청구 ☐ 심사유예신청 ☐ 조기공개신청 ☐ 공지에외적용	
☒ 미생물기탁 ☒ 서열목록		☐ 기술이전희망 ☐ 국가연구개발사업	
미생물 기탁 입력			
순번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수탁일자
1	생명공학연구소	KCTC0000P	2008.11.19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0000003		
서열목록 전자파일	첨부		

④ 첨부서류 선택항목과 다른 첨부서류파일 첨부

- 첨부서류 선택항목과 다른 첨부서류파일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보정대상이 됩니다.
- 첨부서류 선택항목과 다른 첨부파일명이나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확인과정을 거쳐 출원서류가 수리되므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대신 원용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가 원용사항 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원용대상 서류는 위임장, 우선권주장증명서류, 공지에외적용대상 증명서류와 특허법시행규칙 6조~9조에 규정된 증명서류만 해당됩니다.)

첨부서류 정보

첨부서류선택

통수

첨부서류파일

보통사항

원용사항

원용번호

위임장

1

[서류명]

10

입력

업로드된 첨부서류 정보

순번	첨부서류명	통수	원용사항	파일경로

내용일치

※ 상기 첨부서류선택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타첨부서류" 혹은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선택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첨부서류명을 "보통사항입력"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작성기에서는 서식작성기의 첨부서류선택사항과 첨부서류입력기에서 입력된 파일의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첨부서류입력기의 입력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틀리기 쉬운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서 기재사항

① 권리구분을 잘못 선택하여 출원

- 상표와 서비스표는 류가 구분(상표 1~34류, 서비스표 35~45류)되어 있어 각 권리구분에 맞는 류를 선택하여 출원하여야 하나 해당되지 않는 류를 선택하여 출원
- 상표서비스표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동시에 출원시 제출하는 서류로 상표와 서비스표를 동시에 제출시 사용하는 서류이나 상표(또는 서비스표)류만 제출

출원구분	☒ 상표등록출원 ☐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 ☐ 상표등록분할출원 ☐ 상표등록변경출원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재출원출원
권리구분	☒ 상표 ☐ 서비스표 ☐ 상표서비스표 ☐ 단체표장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업무표장

② 단체표장, 지리적단체표장은 개인이 출원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출원인을 자연인으로 출원할 수 없습니다.

출원구분	☒ 상표등록출원 ☐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 ☐ 상표등록분할출원 ☐ 상표등록변경출원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재출원출원								
권리구분	☐ 상표 ☐ 서비스표 ☐ 상표서비스표 ☒ 단체표장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업무표장								
출원인	단체표장은 출원인이 자연인이 될 수 없음 입력								
<table border="1"> <thead> <tr> <th>순번</th> <th>성명 / 명칭</th> <th>출원인코드</th> <th>주 소</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홍길동 X</td> <td>4-2008-123456-6</td> <td></td> </tr> </tbody> </table>	순번	성명 / 명칭	출원인코드	주 소	1	홍길동 X	4-2008-123456-6		
순번	성명 / 명칭	출원인코드	주 소						
1	홍길동 X	4-2008-123456-6							

③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정관 등 미제출

- 업무표장은 업무의 경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정관(또는 인가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정보	
첨부서류선택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단체표장은 정관 및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선택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
--------	-----------------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정관, 정관의 요약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선택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
통수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

- 단체표장은 정관 미제출시 보정료 3천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관의 요약서 미제출시는 보정료가 없습니다.

④ 상품(서비스업)류 또는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을 미기재

- 상표(서비스표)출원은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을 등록받고자 제출하는 서식이나 상품(서비스업)류 또는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을 기재하지 않으면 해당상표(서비스표)를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상품류 미기재는 보정대상으로 추후에 보정서를 통해 보정이 되며, 지정상품 미기재는 절차보완서를 통해 출원서가 보완됩니다.

※ 절차보완서 : 절차상 명백한 하자로 출원서 제출일자가 보완서 제출일자로 변경되며 절차보완시 1만원의 보완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		입력
순번	상품(서비스업)류	지정 상품(서비스업, 업무)
	상품류 또는 지정상품 미기재	

⑤ 상표견본을 2개 이상 첨부

- 색채상표, 입체상표, 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유형의 견본은 1개만 첨부하여야 하나 2개 이상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홀로그램상표 또는 동작상표 유형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견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5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표견본을 첨부하지 않거나 2개 이상의 견본을 첨부(홀로그램, 동작상표 제외)한 경우에는 절차보완 대상으로 절차보완서를 통해 출원서를 보완해야 합니다.

상표유형		상표의 설명		수수료		상표견본	
입체상표	색채상표	입체상표	색채상표, 입체상표	출원료	0	상품류수	0 원
입체상표	입체상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동작상표	우선권주장료	0	상품류수	0 원
홀로그램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상표유형 없음		합계	0		0 원

⑥ 분할출원시 수수료 계산 및 삭제보정 오류

- 해당 류를 완전히 분할하지 않고 그 류의 일부지정상품을 분할시에는 신규 출원료를 징수(류당 온라인 56천원, 서면66천원)하고 있으며
- 해당 류 전체를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분할시에는 원출원에서 분할출원 대상 상품을 삭제하는 보정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서	
출원구분	☐ 상표등록출원 ☐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 ☒ 상표등록분할출원 ☐ 상표등록변경출원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재출원출원

3) 틀리기 쉬운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①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를 잘못 선택

- 유사디자인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사디자인의 기본이 된 기본디자인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하나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면 보정의 대상이 됩니다.
- 단독디자인임에도 유사디자인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보정서를 통해 보정하여야 합니다.

② 기타사항 기재 후 수수료 미납

-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이나 ‘디자인비밀보장청구’ 항목을 선택하면서 해당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 보정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당사항 선택시 각 건별로 수수료 20,000원이 추가됩니다.
-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이나 ‘디자인비밀보장청구’ 항목을 선택하였으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서를 통해 삭제할 수 있으며 보정사항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일부무효처분대상이 됩니다.

4) 틀리기 쉬운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기재사항

① 원출원의 존속기간갱신등록 가능기간에 제출하지 않음

-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원출원의 만료 1년 전부터 만료 후 6월 이내에만 갱신이 가능하며 그 외의 기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려사유에 해당됩니다.
- 동일서류를 기간을 달리 제출하여 먼저 제출한 출원서가 등록된 이후에 다른 출원서는 기간 외에 제출된 것으로 되어 반려되기도 하며,
- 원출원의 만료를 1년 1일 앞두고 갱신등록출원(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시에도 소인일자가 원출원 만료전 1년 이내가 아닌 경우에는 반려대상이 됩니다.

② 전환등록대상에 상품류 및 지정상품 미기재

- 전환등록신청시 지정상품을 기재하지 않으면 절차보완대상에 해당되며,
- 원출원의 상품과 다른 상품이 전환등록대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시 거절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5) 틀리기 쉬운 보정서 기재사항

① 보정서 제출시 제출원인번호 오기재

- a. 특허청의 보정요구서 통지에 의한 보정서 제출시에는 제출종류를 ‘통지’로 선택하고 제출원인서류(보정요구서, 의견제출통지서 등)의 발송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다른 제출원인번호를 기재하여 반려대상이 되거나 보정서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종류	통지	통지를 선택시 제출원인번호는 통지서의 제출원인번호 기재 제출원인번호 찾기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자진 통지	

- b. 출원서등 서류를 자진하여 보정코자 하는 경우에는 제출종류를 ‘자진’으로 선택하고 제출원인서류(출원서 등)의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종류	자진	제출원인번호 찾기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자진 통지	

② 보정료가 있는 보정서 제출시 수수료 미납

- a. 위임장 미제출 등 절차보정의 경우에는 보정사항 치유와 함께 보정료 3,000원(서면보정13,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b. 명세서, 도면, 견본 등 내용 보정의 경우에는 보정사항 치유와 함께 보정료 3,000원(서면보정13,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c. 심사청구중인 명세서 보정시 청구항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정료와 함께 청구 범위에 증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d. 지정상품 보정(ex : 지정상품삭제), 디자인변경보정(ex : 유사디자인 ↔ 단독디자인) 등은 보정과 함께 보정료 3,000원(서면보정13,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디자인변경 보정 중 무심사에서 심사로의 보정은 18,000원(서면 28,000원)
- e. 단체표장(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정관 미제출에 따른 보정시 정관 제출과 함께 보정료 3,000원(서면보정13,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f. 하나의 출원서, 청구서, 기타 절차에 관한 서류 및 그 첨부서류에 보정하여야 할 보정사항이 2이상일 경우에 이를 일시에 일괄하여 보정하는 때에는 1건의 보정으로 보아 1건의 보정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		온라인(FD)	서면	요율표
보정료		0 원		보정료 납부대상의 경우에는 보정료 항목에 보정료 작성 및 납부
기타 수수료		0 원		
합계		0 원		

6) 틀리기 쉬운 취하서 기재사항

① 출원인과 제출인 불일치

- a. 공동출원인이 출원한 경우 취하서 제출시 공동출원인 모두가 제출인이 되어야 합니다.
- b. 출원인대표가 선임되어도 취하서 제출시 공동출원인 모두가 제출인이 되어야 합니다.

② 특별수권이 위임되지 않은 대리인의 취하서 제출

- a. 대리인이 변경, 포기, 취하, 국내우선권주장출원 및 그 취하, 청구 취하 등 권리관계에 변동을 주는 중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위임사항에 특별수권사항이 위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하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반환

취하(포기)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구분

☒ 특허 등 절차 취하

☐ 심판청구 취하

☐ 심판참가 취하

☐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등) 포기

☐ 우선권주장 취하

☐ 심판청구 일부취하

☐ 특허 등 절차 포기

제출인

입력

순번	성명 / 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제출인이 출원인인 경우에는 출원시 제출인 모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취하서 제출은 취하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야 함

대리인

입력

순번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사건의 표시 찾기

출원번호

10

-

-

취하내용

취하대상 출원

접수번호 - - - -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출원가이드북

071

5

발송 통지서에 따른 제출서류 등 안내

1) 특허청 발송 통지서의 구성

① 보정요구서의 주요 구성

- a. 발송번호 : 보정요구서의 발송번호로서 보정서 제출시 제출원인이 되는 번호
- b. 발송일자 : 보정요구서의 발송일자
- c. 제출기일 : 보정요구서에 대한 보정서 제출 만료일
- d. 출원번호 : 보정요구 대상 서류의 출원번호
- e. 보정할서류 : 보정요구 대상 서류의 접수번호

※ 보정할 서류의 접수번호는 자진보정의 경우에만 보정서의 제출원인번호로 입력

- f. 보정할 사항 : 치유해야 할 보정사항 안내
- g. 참고사항 : 해당 보정사항을 치유시 주의사항 안내

발송번호 : 발송일자 : 제출기일 :	발송번호 : 152005000334474 발송일자 : 2005.01.12 제출기일 : 2005.02.1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6.6%;">담당</td> <td style="width: 16.6%;">사무관</td> <td style="width: 16.6%;">과장</td> <td style="width: 16.6%;">국장</td> <td style="width: 16.6%;">차장</td> <td style="width: 16.6%;">청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결</td> <td></td> <td></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결재</td> </tr> </table>	담당	사무관	과장	국장	차장	청장	전결					결재
담당	사무관	과장	국장	차장	청장									
전결					결재									

YOUR INVENTION PARTNER
특 허 청
보 정 요 구 서

출원인명칭	재단법인서울대학교산학협력재단(2-2003-007067-6)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7동 산4의 2번지
대리인성명	김진학(9-2001-000249-6)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빌딩1106호(특허법률사무소광아)

출원번호 : 출원번호 10-2005-0000025

발명의명칭 : 고강도 건축 재생용 이산화탄소 흡수제

보정할서류 : 보정할서류 접수번호 1-1-2005-000026175[특허출원서]

1. 위의 보정할 서류에는 아래와 같은 보정할 사항이 있음을 특허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리오니, 제출기일까지 보정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2. 제출기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더라도 보정할 사항을 치유하지 못한 때에는, 위의 보정할 서류는 특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보정할 사항 : [보정할 사항]
위 서류에 필요한 위임장(또는 복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끝.

참고사항 : <참고사항>
위임장(또는 복위임장)을 첨부한 보정서(보정구분:출원서등보정)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보정료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3,000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3,000원입니다.

특 허 청

② 의견제출통지서의 주요구성

- a. 발송번호 : 의견제출통지서의 발송번호로서 의견서 제출시 제출원인이 되는 번호
- b. 발송일자 : 의견제출통지서의 발송일자
- c. 제출기일 :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보정서 제출 만료일(통상 서류발송일로부터 2월)
- d. 출원번호 : 의견제출통지 대상 서류의 출원번호
- e. 보정할서류 : 보정요구 대상 서류의 접수번호
- f. 심사결과 : 출원 명세서에 대한 심사결과 안내
- g. 구체적인 거절이유 : 거절청구항의 거절사유 설명

발송번호 :
발송일자 :
제출기일 :

발송번호 : 9-5-2008-012345678
발송일자 : 2008.05.16
제출기일 : 2008.07.16

심사관	파트장	팀장	국장	보 고

YOUR INVENTION PARTNER

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

출원인명칭 : 주식회사 김이박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대리인성명 : 김이박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발명자성명 : 이박김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출원번호 : 10-2007-00
발명의명칭 : 발명의 명칭 입력

출원번호 :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특허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답변, 소명)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또는/및 보정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보정할 사항 :

[심사결과]

- ☐ 심사 대상 청구항 : 제1-6항
☐ 이 출원의 거절이유가 있는 부분과 관련 법조항

순번	거절이유가 있는 부분	관련 법조항
1	청구항 제1항 내지 제4항	특허법 제29조 제2항

- ☐ 특허가능한 청구항 : 제5-6항

※ 위 특허 가능한 청구항은 의견제출통지시점에서의 심사의견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출원이 특허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출원에 대해 지적된 거절이유가 모두 해소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거절이유 :

[구체적인 거절이유]

1. 이 출원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아래에 지적한 것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 래 -
거절이유 이하 생략

2008.05.16

특허청

정보통신심사국

특허심사팀

심사관

아무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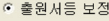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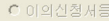


③ 서식작성기를 통해 본 보정서의 주요 구성내용

- a. 보정구분 : 출원서등보정, 명세서등 보정 등 해당 보정구분 선택
- b. 제출종류 : 자진보정인지 통지에 의한 보정인지 종류 선택
- c. 제출원인 발송번호 : 제출종류가 '통지'인 경우에는 보정요구서의 발송번호, '자진'인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접수번호 기재
- d. 보정할서류 : 특허출원서, 취하서 등 보정할 서류 선택
- e. 보정할사항 : 발명자추가, 법정대리인삭제, 미납수수료 납부, 첨부서류제출 등 보정대상 서류를 보정
- f. 수수료 : 위임장, 명세서 보정시 3,000원(서면 13,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서류의 수수료미납 보정건에 대해서도 수수료 기재 후 납부 가능

보정서



보정구분 : ☒ 보정구분   
☐ 심판청구서등보정 ☐ 심판청구서등보충 ☐ 결정명세서등보정

제출처 : ☒ 특허청장 ☐ 특허심판원장 ☐ 심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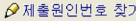
제출인 : 

순번	성명 / 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1	홍길동	4-2008-123456-6	출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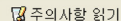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10 - 2008 - 1234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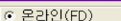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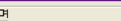
제출종류 : ☒ 제출종류 

제출원인인 된 서류의 발송번호 :  1 - 5 - 2008 - 1234567 - 89

보정할서류 : ☒ 보정할 서류  

보정할 사항 : ☒ 보정할 사항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발명자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발명자】
 【성명】 홍길동
 【출원인코드】 4-2008-123456-6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법정대리인 등
 【보정방법】 삭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수수료
 【보정방법】 납부
 【보정내용】
 미납 수수료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첨부서류
 【보정방법】 제출
 【보정내용】
 【첨부서류】 1. 대표자선임등.1통

수수료 : ☒ 수수료   

보정료	24,000 원
기타 수수료	0 원
합계	24,000 원

2) 주요 통지서에 따른 출원인 제출가능 서류

① 의견제출통지서

- a. 의견서 :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출원인의 의견을 제출시 이용하는 서식
 - 서식탐색기 > 국내중간서식 > 특허, 실용신안 > 의견(답변, 소명)서[별지 제24호 서식]
 - 서식탐색기 > 국내중간서식 > 상표, 디자인 > 의견(답변, 소명)서[별지 제1호 서식]
- b. 보정서[명세서등보정] :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 기재사항이 미흡하여 출원인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충분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이용하는 서식
 - 서식탐색기 > 국내중간서식 > 특허, 실용신안 > 보정서[별지 제9호 서식]

② 보정요구서

- a. 보정서[출원서등보정] : 출원서 또는 기타 중간서류 등에 기재미비, 오기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법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서식탐색기 > 국내중간서식 > 특허, 실용신안 > 보정서[별지 제9호 서식]
 - 서식탐색기 > 국내중간서식 > 디자인 > 보정서[별지 제2호 서식]
 - 서식탐색기 > 국내중간서식 > 상표 > 보정서[별지 제4호 서식]

③ 반려이유안내서

- a. 서류반려요청서 : 반려이유를 통지받고 소명기간내에 소명없이 제출한 서류를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서식탐색기 > 국내중간서식 > 공통 >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 b. 소명서 :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출원서류등에 대하여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서식탐색기 > 국내중간서식 > 특허/실용신안 > 의견(답변, 소명)서[별지 제2호 서식]
 - 서식탐색기 > 국내중간서식 > 상표, 디자인 > 의견(답변, 소명)서[별지 제4호의8 서식]

④ 절차보완요구서

- a. 절차보완서 : 상표등록출원시 절차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는 서식
 - 서식탐색기 > 국내중간서식 > 상표 > 보정(보완)서[별지 제4호 서식]

⑤ 협의요구서

- a.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신고서 : 경합하는 출원중 하나의 출원을 정하여 그 권리자를 신고하는 경우 또는 경합하는 출원인변경신고중 하나의 출원인을 정하여 그 권리자를 신고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서식탐색기 > 국내중간서식 > 공통 > 권리관계변경신고서[별지 제20호 서식]

⑥ 우선심사보완요구서

- a.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 우선심사 신청절차를 보완하고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제출하는 서식
 - 서식탐색기 > 국내중간서식 > 공통 >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별지 제1호서식]

⑦ 분할출원불인정예고통지서

- a. 의견서 : 우선권주장불인정 또는 분할/변경 출원불인정통지서 등을 받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용하는 서식
 - 서식탐색기 > 국내중간서식 > 디자인 > 의견(답변, 소명)서 > 출원절차[별지제1호서식]



3) 특허청 발송통지서에 대한 관련지식 수집

① 심사지침서

-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심사관의 심사시 지침가이드로 법 조항 및 해당사례에 대한 심사처리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홈페이지 > 정보광장 > 간행물 > 심사지침, 기준, 매뉴얼(또는 검색창에서 검색)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KIPO website's 'Information Plaza' (정보광장) section. On the left is a sidebar menu with categories like 'Internet Information', 'Publications', 'Patent Information', 'Design Information', 'Trademark Information', 'Copyright Information', 'Patent Law', 'Patent Examination', 'Patent Disputes', 'Patent Information', 'Patent Information', 'Patent Information'.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Examination Guidelines, Standards, and Manuals' (심사지침, 기준, 매뉴얼). It lists several documents for download, including 'Examination Guidelines for Utility Models' (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 'PCT International Search and Preliminary Examination Guidelines'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and 'Trademark Examination Guidelines' (상표·디자인심사지침서). The 'Examination Guidelines for Utility Models' is expanded, showing its table of contents: 1. General Provisions, 2. Examination Procedures, 3. Examination Standards, 4. Examination Results, 5. Examination Procedures, 6. Examination Results. A download link for the PDF version is provided.

② 방식심사지침서

- 출원방식심사 담당관의 방식심사 지침 가이드로서 제출 서류의 요건 등 기재사항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지침서입니다.
- 특허청홈페이지 > 정보광장 > 간행물 > 심사지침, 기준, 매뉴얼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관련법령 검색

- 보정요구서나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법령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필요하며
- 특허청 홈페이지 > 정보광장 > 법령자료(또는 검색창에서 검색)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www.kipo.go.kr/kipo/user.tdf?a=user.html,HtmlApp&c=3031&catmenu=m02_03_01

Home Sitemap English RSS

고객광장 정보광장 정책광장 특허정보 고충민원 특허로

인터넷 공보 사이버 공지 법령자료 간행물 KOASIS우수지식 통계/동향/분석 정보공개

법령자료

지식재산부국 코리아 특허청

사이트내검색 특허정보검색 Search

인쇄하기

정보광장

산업재산권 법령체계도

Home > 정보광장 > 법령자료 > 산업재산권 법령체계도

산업재산권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은 법제처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최신 법령정보를 제공하며 시스템 사정에 따라 정보제공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제·개정 및 폐지된 법령의 업데이트는 법제처의 법령작업에 따라 법령정보 제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최근 개정법률/대통령령/부령'에서 개정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혁법령상세법령 바로가기 관련훈령/예규고시 바로가기

산업 재산권 법령 체계도

번호	대통령령	부령
특허법	- 특허법시행령 - 특허등록령 -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	- 특허법시행규칙 - 특허등록령시행규칙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법시행령 - 실용신안등록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시행령 - 디자인등록령	-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상표법	- 상표법시행령 - 상표등록령	- 상표법시행규칙 - 상표등록령시행규칙
발명진흥법	- 발명진흥법시행령 - 공무원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관한규정	-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 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인터넷공보
- 인터넷공보 안내
- 기간별공보 조회
-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상표이미지 조회
- 장정정보
- 공시송달 등 기타공보
- 매일링서비스

사이버공지

법령자료
- 산업재산권법령체계도
- 최근개정법률/대통령령/부령
- 입법예고
- 훈령/예규/고시
- 최근 개정훈령/예규/고시

제4 장

유익하고, 재미있는 통계 및 정보



Point

유익하고, 재미있는 각종 통계 및 정보를 통해 산업재산권의 중요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특허청과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를 획득



1.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 1) 출원은 계속 중
- 2) 출원, 여기를 조심하세요
- 3) 여성출원, 수도권·40대가 주도
- 4) 상담은 콜센터로

2.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 1)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발명품
- 2) 위조상품(짝퉁) 식별법
- 3) Patent Troll(특허괴물)
- 4) 상표에 관한 짧은 이야기

3. 특허청과 유관기관

- 1) 특허청 조직
- 2) 대민행정 최일선 기관(부서)
- 3) 특허청 유관기관
- 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민간인 교육과정

4. 인터넷을 이용한 특허정보 검색



제4장 유익하고, 재미있는 통계 및 정보

1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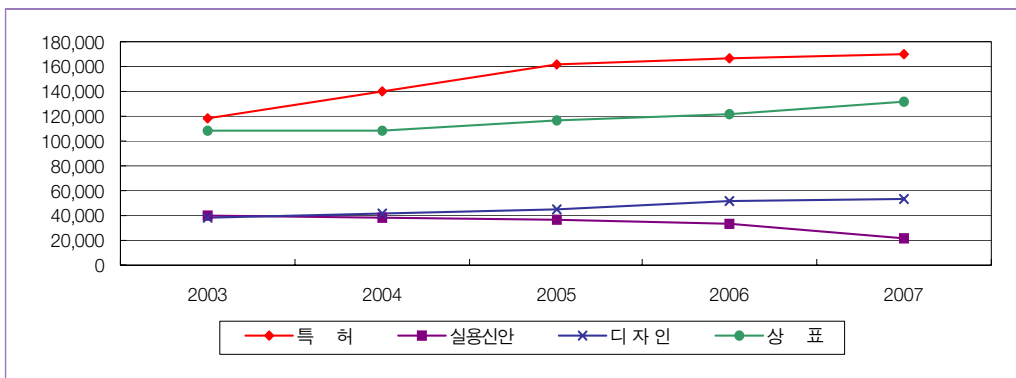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통계/동향/분석' 코너에 접속해 보세요.
출원/심사/등록/심판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출원은 계속 중

1997년 IMF 여파 등으로 1997년, 1998년 출원이 전년대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1999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2007년 출원 38만여 건을 기록하여 10년 전인 1997년 254,099건 대비 49.6%p 증가

최근 5년간 특허·디자인·상표 출원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는 기술과 제품의 고도화·다양화 및 첨단디자인을 앞세운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방식의 전환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특 허	118,652	140,115	160,921	166,189	172,469
실용신안	40,825	37,753	37,175	32,908	21,084
디자인	37,607	41,184	45,222	51,039	54,362
상 표	108,917	108,464	115,889	122,384	132,288
합 계	306,001	327,516	359,207	372,520	380,203



2) 출원, 여기를 조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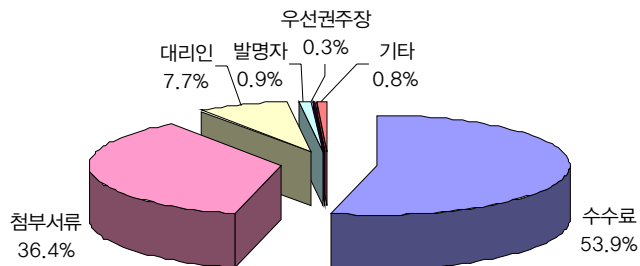
2007년 기준으로 출원관련 전체 제출서류 1,032,685건 중 보정 또는 반려사유가 발생한 건은 51,442건으로 4.98%의 오류율을 기록

보정 유형별로는 ‘수수료’ 및 ‘첨부서류’와 관련된 오류가 전체 보정사유의 90.3%, 반려 유형별로는 ‘제출인’ 및 ‘사건의 표시’와 관련된 오류가 58.4%를 점유

출원서류와 청구항 수 및 감면제도 등에 따른 수수료 계산 체계, 사건의 표시 오기재로 인해 해당 서류가 타 출원인 서류로 제출, 지속적인 서식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첨부서류의 다양화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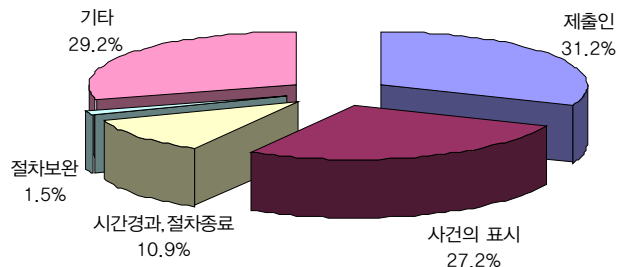
[보정 유형별 세부사유 현황]

구 분	발생건수
수수료	23,518
첨부서류	15,887
대리인	3,378
발명자	374
우선권주장	118
기타	364



[반려 유형별 세부사유 현황]

구 분	발생건수
제출인	2,436
사건의 표시	2,122
기간경과 등	846
절차보완	118
기타	2,281



3) 여성출원, 수도권·40대가 주도

2007년 여성출원은 16.5%로 전년대비 4.0%p 감소하였으나 2003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2003년의 12.8% 대비 3.7%p 증가

여성출원 증가는 산업재산권별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 2007년의 경우 2003년 대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이 각 3.7%p, 2.4%p, 6.5%p, 2.3%p 증가하였고, 디자인분야 출원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개인출원		107,909	106,964	113,365	119,792	118,773
여성출원	특 허	1,586	1,891	2,268	2,932	3,672
	실용신안	2,442	2,271	2,386	2,429	1,572
	디 자 인	2,226	2,342	3,178	5,911	4,807
	상 표	7,591	7,782	8,323	8,982	9,598
	합 계	13,845	14,286	16,155	20,254	19,649

여성출원의 지역별 분포는 2007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지역이 68.1%를 점유하여 비수도권 지역과 양극화를 보이고 있으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출원 비율이 증가하여 조금씩 차이가 줄어드는 추세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여성출원	13,845	14,286	16,155	20,254	19,649
서울	5,553	5,737	6,542	9,352	7,579
경기,인천	4,207	4,278	4,740	5,208	5,792
대구,부산,울산,경상	2,257	2,436	2,609	2,792	3,032
대전,충청	937	915	1,092	1,405	1,689
광주,전라	646	684	796	1,083	1,170
강원, 기타	245	236	376	414	387

여성출원의 연령별 분포는 2007년 기준으로 40대 이상이 54.1%를 점유하여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나 2003년 이후 감소 또는 소폭 상승 추세인 것에 비해 20대 이하 여성출원은 2003년 13.8% 대비 2007년 19.7%로 5.9%p 상승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여성출원	13,845	14,286	16,155	20,254	19,649
20대 이하	1,906	1,892	2,364	3,411	3,876
30대	4,716	4,638	4,653	4,888	5,145
40대	5,262	5,562	6,155	8,765	7,122
50대 이상	1,961	2,194	2,983	3,190	3,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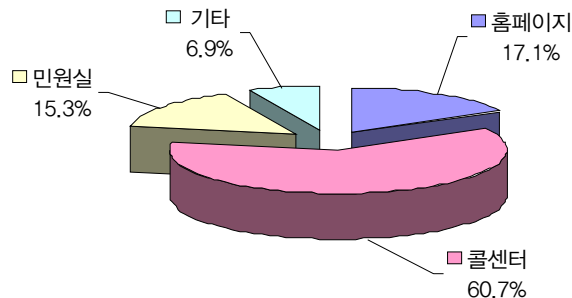
4) 상담은 콜센터로

2002년 3월 24명의 상담원으로 운영에 들어간 특허고객콜센터는 2008년 현재 44명의 전문상담원이 산업재산권에 대한 One-Stop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 6월 이용고객 300만을 돌파

특허고객콜센터는 공시송달·등록료 미납 고객 등을 대상으로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통해 안내하는 엔젤콜(Angel call), 고객 애로사항을 책임상담원이 전화하여 해결해주는 해피콜(Happy call) 및 업무시간 이외에 상담예약을 남기면 다음날 전화를 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5
전화상담	176,128	365,962	455,435	505,680	556,468	578,984	244,849
엔젤콜	-	-	-	1,522	1,465	95,955	43,003
해피콜	-	-	-	1,351	1,390	1,783	246
사용자지원	9,184	23,304	20,040	20,075	19,790	19,072	10,805
합 계	185,312	390,394	476,133	528,628	579,113	695,794	298,948
월 평균 처리건수	20,590	32,533	39,678	44,052	48,259	58,150	59,790

2007년 기준으로 월 평균 58천여 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특허고객이 출원단계에서 애로사항 발생시 콜센터를 통해 해결하는 비율이 60.7%('08. 7월 설문조사결과)에 이르는 등 콜센터는 명실상부한 상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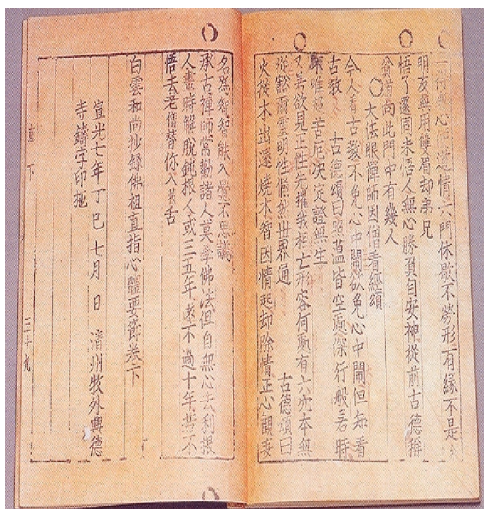
2009년 1월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이 구축·운영되면 콜센터의 역할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보다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안내를 통해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

2

재미있는 특허이야기

'특허청 뉴스'(kipo.korea.kr)에 접속해 보세요. 생활 속 발명이야기, 가장 최근 특허 정책 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기사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발명품



세계최초 금속활자-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직지심체요절은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에 금속활자로 간행한 책으로 원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다.

이 책은 1450년 독일의 쿠텐베르크가 발명하여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라고 알려졌던 금속활자보다 약 73년이나 앞선 것으로 1972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도서의 해”에 출품되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공인되었다.

측우기(測雨器)

비가 내린 양을 재는 기구로 조선 세종 23년(1441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했고, 그 뒤 개량에 힘써 세종 24년(1442년)에 측우기라고 이름하였다.

이 측우기는 이탈리아의 카스텔리가 만든 측우기보다 200년이나 앞선 것으로, 우리나라의 자연조건을 통계적으로 파악하여 농업 생산에 이용하는 한편, 자연재해를 이겨내려고 애쓴 조선시대 과학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자격루(自擊漏)

1434년(세종 16년) 왕명으로 장영실 등이 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 물시계로 시(時)·경(更)·점(點)에 맞추어 종과 북·징을 쳐서 시각을 알렸다.

세종 때 만든 자격루는 현재 모두 불에 타 없어졌으며 유일하게 덕수궁에 남아 있는 국보 제229호는 1536년(중종 31년)에 장영실이 만든 것을 개량한 것으로 효종 이후부터 조선 말기까지 표준시계로 쓰였다.

규표(圭表)

세종 19년(1437년)에 만든 규표는 일 년의 길이가 정확히 몇 날인가(365일 1/4일)와 24절기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던 도구이다.

수직으로 세운 막대 표의 그림자 길이를 기준으로 동지, 하지, 춘분, 추분이라 하고, 나머지 20개 절기를 그 사이에 약 15일 간격으로 배열한 것이다. 하루 중 그림자 길이가 가장 짧은 때는 정오이며, 규를 설치한 방향은 정확하게 그 지점의 남북 방향이다.



대신기전(大神機箭)

로켓기술을 활용한 조선시대 병기 '신기전'은 1448년 개발되어 유럽보다 350여년 앞선다. 그 중 '커다란 귀신 같은 기계화살'이란 뜻을 가진 '대신기전'은 길이 5.6m에 무게가 7~8kg이며 최고 2km까지 날아가는 당시 세계 최장거리 로켓 병기였다.

임진왜란 때 그 위력을 발휘한 신기전은 전쟁시 표적을 태워버리는 무기로 쓰였으며, '기화'라 하여 불, 연기, 소리 등을 통한 신호 수단으로도 쓰였다.



2) 위조상품(짝퉁) 식별법

① 구찌(GUCCI)

□ 식별방법

품 목	진 품(Genuine)	가짜품(Counterfeit)
의류 가방 잡트발 신발	- 사용된 장식의 마무리가 깔끔함 - 상품에 고유코드가 있는 Tag이 있음 - 소재와 부자재가 고급스러움 - 가죽이 고급스러움	- 장식이 조잡함 - 고유코드가 없거나 있어도 다름 - 소재나 부자재의 질이 현저히 떨어짐 - 가죽의 질이 현저히 떨어짐

〈핸드백〉

진짜



가짜



〈핸드백〉 손잡이 연결부분

진짜



메탈 장식판의 아랫부분에 로고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가짜



메탈 장식판의 가운데 부분에 로고가 조잡하게 찍혀 있다. 글자의 크기도 진짜 상품에 비해 크다.

② 로렉스(Rolux)

□ 식별방법

품 목	진 품(Genuine)	가짜품(Counterfeit)
보증서	- 보증서, 빨간색 Real Seal 메달, 파란색 제조번호 메달이 있음	- 보증서, Real Seal 메달, 제조번호 메달이 없음
로 고	- 왕관마크가 작고 옆에서 보면 약간 볼록하며 크라운의 잠금 상태가 부드러움	- 왕관마크가 크고, 엉성하며 크라운의 잠금 상태가 엉성함

〈남성시계〉

진짜



가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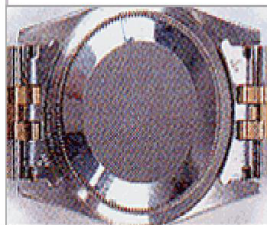
〈남성시계〉 케이스 뒤판(새 시계일 경우)

진짜



케이스 뒤판 그림 태그에 로렉스 왕관 마크와 16233과 같은 모델 번호가 새겨 있고, 그린 태그를 측면에서 보면 ROLEX라는 글자가 작은 크기로 이어져 쓰여 있다.

가짜



케이스 뒤판 그린 태그가 없으며 로렉스 왕관 마크와 모델 번호도 적혀 있지 않다.

③ 양주(Foreign Liquors)

□ 식별방법

품 목	진 품(Genuine)	가짜품(Counterfeit)
레이블	- 인쇄 상태 양호 - 부착 상태 양호 - 제조업체 표기 명확	- 인쇄 상태 조잡, 글씨 등의 번짐이 있음 - 탈부착 흔적이 있거나 조잡 - 제조업체명이 오기
뚜 경	- 인쇄 상태 또는 제품 로고 명확 - 병마개의 마무리가 깔끔함	- 제품명 또는 칼라가 명확치 않음 - 로고가 엉성하게 표현 - 병마개에 개봉의 흔적이 있거나 마무리가 조잡함
수입인지	- 수입 인지 부착	- 수입 인지가 현행 것이 아니거나, 인쇄가 조잡한 경우
기 타	- 병의 형태가 정확하고 세련됨 - 내용물의 색깔이 맑고 진함	- 병의 형태가 엉성하고 조잡함 - 내용물의 색깔이 흐릿함

〈시바스 리갈(CHIVAS REGAL)〉



진짜 시바스 리갈 양주는 술이 병목 위까지 가득차 있지만 가짜는 완전히 차지 않아 병목 부분이 비어 있다.

〈마르텔(MARTELL)〉



마르텔 양주의 병마개는 색깔이 깨끗하고 술의 색과 같은 톤이다. 가짜는 병마개의 색이 검은색에 가깝고 디자인도 거칠며 조잡하다.

3) Patent Troll(특허괴물)



□ Patent Troll 이란?

폐업한 회사나 개인 발명가로부터 실용화되지 않은 특허권을 헐값에 매입하거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확보한 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거나 응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정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이익을 취하는 회사입니다.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특허괴물은 특별한 생산시설 및 영업조직을 두지 않고, 몇몇 발명자, 기술전문가 및 특허소송 변호사를 채용하여 특허를 둘러싼 소송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 특허분쟁사례

○ NTP vs. RIM 사례

- NTP는 미국의 조그마한 특허보유회사, RIM은 캐나다 무선통신기기회사인데, RIM은 BlackBerry라는 제품을 만들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상태였음. 문제는 NTP가 RIM이 성공을 거둔 BlackBerry의 일부 기술에 대해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NTP는 RIM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 RIM과의 6억 1250만 달러 지급합의를 이끌어냄

○ 램버스 vs. Infineon 사례

- 미국 반도체 설계 회사였던 ‘램버스’는 1990년대 말 ‘램버스 D램’이라는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램버스 D램 시장이 기대만큼 커지지 않자 2000년대 들어 주요 반도체 업체를 상대로 SDRAM 표준에 자사 특허가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 전문기업으로 변신하였음. 상기 소송으로 인하여 Infineon사는 2005. 3월 1.5억 달러를 램버스에게 지급하였으며, 국내 S 전자와 H 반도체도 램버스와 현재 소송 중에 있음

□ 대표적인 특허소송 전문기업

- **인텔렉추얼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전 최고 기술책임자(CTO) 네이션 마이어볼트와 전 최고 소프트웨어설계자 에드워드 정이 2000년 공동 창립. 아이러니한 것은 특허괴물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피터 데트킨**이 여기에 소속됨

☞ **피터 데트킨** 2001년에 있었던 미국의 반도체 업체 인텔의 특허분쟁에서 인텔측 변호사였으며, 당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향해 특허권을 이용해서 로열티만 챙기려는 악덕업체라고 비난을 퍼부으며 ‘특허괴물(Patent Troll)’로 규정

- **인터디지털(InterDigital)** : 무선통신 분야에서 4200여 건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 2005년 12월 노키아를 시작하여 파나소닉, 삼성과의 이동통신 관련 특허소송에서 차례로 승소, 노키아로부터 2억 5300만 달러, 삼성전자로부터 670만 달러의 로열티 지급 합의를 도출. 또한 LG전자는 인터디지털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9500만 달러씩 총 2억 8500만 달러의 휴대폰 로열티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NTP** : 모바일 이메일, RF안테나 분야 등에서 수십 개의 핵심 특허를 보유. 노키아·RIM 등과의 특허분쟁에서 이기며 유명해졌음

- **포젠트 네트워크(Forgent Networks)** :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 특허 다수를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확보. 어도비시스템즈 등 유력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으며, 40여 개 PC 제조업체를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임

- **아카시아 리서치(Acacia Research)** : 생명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을 하고 있으며, 47개 기술분야에서 매년 다량의 특허를 매입함

- **오션 토모(Oecon Tomo)** :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인수 및 이전 컨설팅이 전문. 2006년부터 특허경매를 주최하면서 경매 방식으로 특허를 매입함

4) 상표에 관한 짧은 이야기

① 상표와 상호

	상 표	상 호
정 의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명칭을 말하며, 문자로 기재하여 호칭할 수 있는 것
효 력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의 독점 배타적 사용권(전국)	관할지역에 한정된 동종 영업의 상호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침해에 따른 권리행위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행사	사용폐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사용에 따른 과태료 청구
등록기관	특허청	등기소
적용법령	상표법	상법

□ 상표와 상호의 가상 충돌사례

주식회사 무역맨 vs. 무역맨(상표권자)

“주식회사 무역맨”(www.muyuckman.co.kr)은 서울에서 무역관련사업을 하는 회사(이하 “갑”이라 함)이다. 그런데 어느 날 “무역맨”(www.muyukman.com)이란 회사(이하 “을”이라 함)가 광주를 중심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호도 비슷하고, 도메인네임도 비슷하여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갑은 을에게 정중하게 “무역맨”이란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을은 이 상호로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해 두었으므로 갑이 계속하여 “주식회사 무역맨”이란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당장 상호사용을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다.

Q1 그렇다면 “주식회사 무역맨”은 “무역맨”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일까?

-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품 혹은 업종에 사용하면 상표권의 침해가 된다. 따라서 갑이 을의 등록상표 “무역맨”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일반적 상호로의 사용 외에 사용한다면 갑은 을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Q2 일반적인 상호의 사용이란 무엇이고, 갑이 계속해서 상호를 사용하려면?

- 갑이 을의 상표권을 사용하여 부정경쟁의 목적이 아닌 을의 상표권 효력발생시기 이전부터 사용해왔던 본인의 상호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상호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때 갑은 상호표기의 방식을 넘어서 도안화하지 않고 다른 디자인과의 결합 없는 일반적인 상호를 사용해야만 한다.

② 상표와 Domain-name

	상 표	도 메 인
정 의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인터넷에 연결된 네트워크상의 컴퓨터 주소를 일반인이 기억하기 쉽게 문자나 기호를 결합하여 나타낸 것
효 력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의 독점 배타적 사용권(전국)	등록 도메인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
침해에 따른 권리행위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행사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말소 청구권
등록기관	특허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적용법령	상표법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 상표 vs 도메인 충돌사례

CHANEL vs. chanel.co.kr 사건

샤넬사(CHANEL)가 아닌 타인이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chanel.co.kr 도메인네임을 등록, “샤넬인터넷 내셔널”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종 성인용품과 란제리 등을 통신판매하였다.

이에 법원은 상표권자가 아닌 타인이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한 문자로 도메인네임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샤넬 상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도메인네임으로 등록사용을 금지, 샤넬(chanel.co.kr) 도메인네임 등록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상표와 도메인은 사업을 위해서 분리된 객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표와 도메인을 처음 브랜드명을 설정할 때부터 상표와 도메인에 대한 충분한 검색과 법률검토를 통해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2008년 10대 글로벌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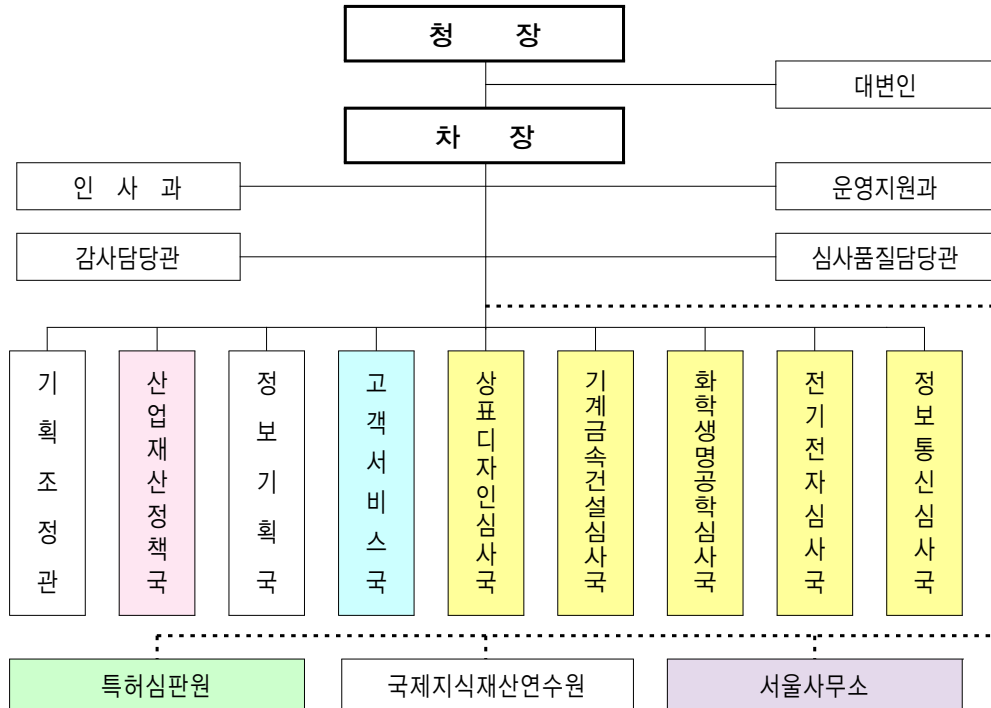
순위		브랜드	등록상표	가치(달러)
2008	2007			
1	1	코카콜라		666억 6천 7백만
2	3	IBM		590억 3천 1백만
3	2	마이크로소프트		590억 7백만
4	4	제너럴 일렉트릭		530억 8천 6백만
5	5	노키아		359억 4천 2백만
6	6	토요타		340억 5천만
7	7	인텔		312억 6천 1백만
8	8	맥도날드		310억 4천 9백만
9	9	디즈니		292억 5천 1백만
10	20	구글		255억 7천 7백만
21	21	삼성		176억 8천 9백만
72	72	현대자동차		48억 4천 6백만

※ 출처 : 인터브랜드('2008 Best Global Brands')

3

특허청과 유관기관

1) 특허청 조직 : 1관 8국 51과 16팀, 3소속기관



※ 주요 국·소속기관에서 하는 일

산업재산정책국

- 발명장려, 직무발명 활성화,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지역 지식재산 창출 등
- 산하단체 관련업무, 산업재산인력 양성, 부정경쟁행위 방지 등

고객서비스국

- 산재권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국제)출원·등록 방식심사 등
- 고객서비스센터 및 콜센터 운영·관리, 민원관련 제도개선 등

5 개 심사국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및 관련법령 제·개정 등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실체심사, 선행기술조사 및 IPC 분류 등

특허심판원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및 관련법령 제·개정 등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심판 및 소송수행, 심판·소송관련 연구 등

서울사무소

- 출원·등록·심판서류 등 접수, 등록증·우선권증명서류 교부 등
- 특허정보 무료검색, 열람지원 및 상담업무 등

2) 대민행정 최일선 기관(부서)

① 특허고객콜센터



□ 특허고객콜센터는 한번의 전화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ONE-STOP 서비스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록, 심판업무와 관련한 서식작성, 수수료, 제출서류 등에 대한 친절한 상담으로 특허고객에게 감동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서비스(1544-8080)

- 평일: 09:00~19:00 / 토요일: 09:00~13:00,
- 공휴일·일요일: 휴무

☞ 전자출원, 더 이상의 실수는 없습니다.

2009년 1월,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 개통!!!

전자출원을 통한 서류작성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번호를 입력하면 콜센터 상담원과 오류 및 출원정보를 공유, 신속·정확한 맞춤형 해결이 가능해 집니다.

② 서울사무소(서울) 및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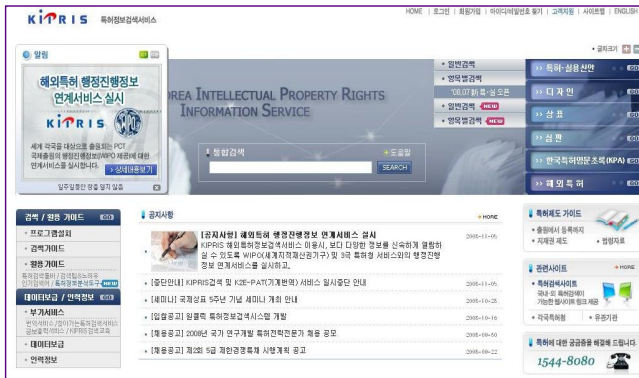
□ 출원·등록·심판서류 등 접수, 등록증·우선권증명서류 등 교부, 각종 제증명·복사서류 발급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업무별 담당자 전화번호

서울사무소	업무구분	특허고객서비스센터
02) 568-8155 (321)	특허·실용신안 전반 민원상담	042) 481-8223
02) 568-8155 (323)	디자인·상표 전반 민원상담	042) 481-5221
02) 568-8155 (310)	특허·실용신안 서류접수	042) 481-5216
02) 568-8155 (351)	디자인·상표 서류접수	042) 481-5200
02) 568-8155 (332)	우선권 및 출원사실 증명 발급	042) 481-5224
02) 568-8155 (310)	국내출원인코드담당	042) 481-5218
02) 568-8155 (351)	국외출원인코드담당	042) 481-5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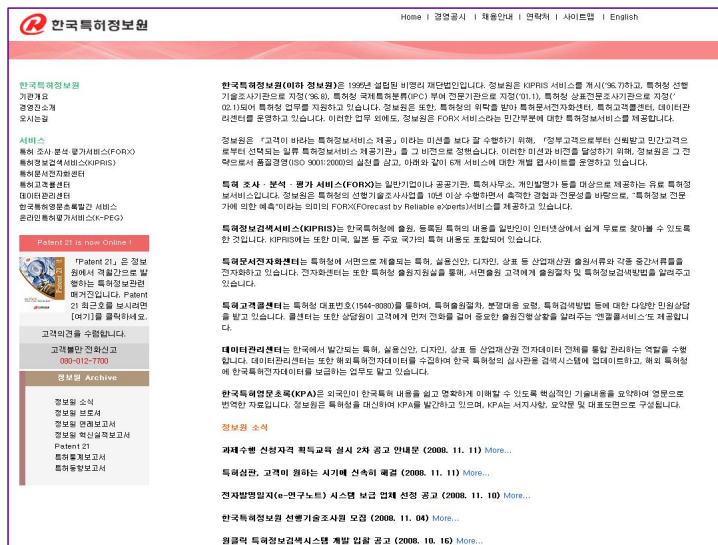
3) 특허청 유관기관

① 한국특허정보원(www.kipi.or.kr)



□ 한국특허정보원 소개

한국특허정보원은 1995년 7월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국가 특허 기술정보 인프라 구축, 우수발명의 창출과 첨단기술 개발 도우미 역할 등 특허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입니다.



□ 한국특허정보원 주요사업

- 특허청 선행기술 및 상표조사
- 국제특허분류 부여 및 한국특허정보의 보급
- 특허문서전자화, 데이터관리 및 특허고객 콜센터 (위탁) 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특허정보조사
- 대민 특허정보조사 서비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구축한 산업재산권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해 산업계, 연구소, 특허사무소 등에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신속·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특허기술 전문서비스

②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 한국발명진흥회 소개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발명진흥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발명가의 이익증진 도모 및 국내 지식재산산업을 보호·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립되었습니다.

□ 한국발명진흥회 주요사업

- 특허사업화지원 :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로부터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 발명가 및 중소기업에 발명에서 사업화까지 일괄지원 체제를 구축, ONE-STOP 서비스 제공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 등
 - ※ 「특허기술상설장터(on-line)」 운영 : www.patentmart.or.kr
- 전시 및 행사 : 전 국민의 발명기반조성 및 발명 마인드 확산과 국내발명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전시회 및 행사를 주관
 -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발명특허대전」, 「발명장학생선발대회」 등

③ 한국여성발명협회(www.inventor.or.kr)



□ 한국여성발명협회 소개

1993년 여성 발명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여성 발명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잠재력 있는 여성 발명가를 발굴·육성하며, 여성 발명의 사업화 지원과 여성 발명 장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여성발명협회 주요사업

- 여성발명사업화지원 : 발명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발명 관련 지원제도 및 자금을 안내 또는 추천하고, 순수 여성발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제품을 제작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특허등록을 통해 여성의 경제 활동을 도모

※ 「세계여성발명대회(www.kiwie.or.kr)」, 「변리자문서서비스제공」 등

- 여성 발명인력 양성사업 : 여성의 발명과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발명에 관심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발명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 여성 발명 인구의 저변을 확대

※ 「여성발명창의교실」, 「여성지식재산권설명회」 등

④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



□ 지역지식재산센터 소개

1978년부터 특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5개 시도 상공회의소를 지정하여 운영한 '지방특허자료열람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29개 지역지식센터를 운영하여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민원상담, 지식재산권 설명회, 지자체 등 발명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 주요사업

-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 특허정보를 사전에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R&D 방향 설정 및 개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
 - ※ 「지역 중소기업 등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현장지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허스타기업 육성」 등
-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 최근의 거센 시장개방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의 활성화 및 다양한 지역브랜드 사업을 통하여 지역(자자체)이 브랜드 잠재력을 인식, 차별화된 지역별 우수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29개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08년 7월 기준)〉

NO	센터명(운영기관)	연 락 처	주 소
1	경기지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031)500-303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11 (426-791)
2	수원지식재산센터 (수원상공회의소)	031)244-345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 2동 80-17 (440-834)
3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870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7 29B-1L (405-777)
4	부평지식재산센터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	032)512-8023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86-454 (403-130)
5	부천시지식재산센터 (부천산업진흥재단)	032)621-208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3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3호 (420-734)
6	춘천시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033)258-6580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25 벤처비즈니스살롱 1층 (200-957)
7	강릉지식재산센터 (강릉상공회의소)	033)643-4411	강원도 강릉시 교2동 349-2 (210-922)
8	강원지식재산센터 (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터)	033)749-3333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 (220-952)
9	태백지식재산센터 (태백상공회의소)	033)552-5555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64-6 (235-010)
10	충남지식재산센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041)556-7131	충남 천안시 원성2동 286-7 (330-072)
11	서산지식재산센터 (서산상공회의소)	041)663-3063	충남 서산시 읍내동 114-1 (356-805)
12	대전지식재산센터 (대전테크노파크)	042)867-4002	대전시 유성구 탑림동 694번지 대전테크노파크(305-343)
13	충북지식재산센터 (청주상공회의소)	043)254-428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16-84 (360-713)
14	충주시지식재산센터 (충주상공회의소)	043)843-7002	충북 충주시 금릉동 693번지 상의회관 1층 (380-956)
15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051)645-9683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 문현회관 1층 (608-823)

NO	센터명(운영기관)	연 락 처	주 소
16	부산지식재산센터 (부산테크노파크)	051)974-9062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1276번지 부산TP POST-BI동 306호 (618-230)
17	울산지식재산센터 (울산상공회의소)	052)228-3083	울산시 남구 신정 3동 589-1 (680-722)
18	대구지식재산센터 (대구상공회의소)	053)242-8081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107 (701-702) 2000. 2 (설치)
19	안동지식재산센터 (안동상공회의소)	054)859-3090	경북 안동시 운흥동 300-6 (760-110)
20	구미지식재산센터 (구미상공회의소)	054)454-6601	경북 구미시 송정동 454 (730-716)
21	포항지식재산센터 (포항상공회의소)	054)274-2233 (132)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2 (790-827)
22	마산지식재산센터 (마산상공회의소)	055)241-4121	경남 마산시 산호동 17-5 (631-480)
23	진주지식재산센터 (진주상공회의소)	055)753-0411	경남 진주시 상대2동 341-3 (660-802)
24	경남지식재산센터 (창원상공회의소)	055)283-0608	경남 창원시 신월동 97-6 (641-738)
25	순천지식재산센터 (순천.광양상공회의소)	061)741-5511	전남 순천시 장천동 58-2 (540-959)
26	전남지식재산센터 (목포상공회의소)	061)242-8581	전남 목포시 중동 2가 1번지 (530-110)
27	광주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062)954-3841	광주 광산구 도천동 621-15 하남 3차공단 중소기업진흥센터 2층 (506-301)
28	전북지식재산센터 (전주상공회의소)	063)288-301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2가 140-11 (560-040)
29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상공회의소)	064)757-2164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4B-1L (690-029)

4) 국제지식재산연수원(iipti.kipo.go.kr) 민간인 교육과정

과 정 명	주 요 과 목	교 육 대 상	교육 기간	교육 횟수	기당 인원
12개 과정	-	-	-	24	-
단체연수(찾아가는 교육)	수요자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	기업체, 연구소, 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기관 임직원 등	2	1	30
단체연수(찾아가는 교육)		기업체, 연구소, 각종 단체	5	7	30
PCT 국제출원 실무	PCT 국제출원총론, PCT 수리 관청에서의 절차 및 출원서 작성 실습 등	기업체, 연구소, 특허 법률사무소 직원 및 관련업무 종사자 등 일반인	3	1	30
디자인 고급	디자인 특론, 디자인 프로세스 등		3	1	20
산업재산권	지재권제도 개요, 특허·실용 신안제도 등		5	5	40
상표와 디자인	상표·디자인 보호제도 및 출원서 작성 실무 등		3	1	30
특허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선행기술 조사방법, 특허명세서 사례분석 등		3	2	30
특허분쟁 대응전략	국제특허분쟁 동향 및 사례, 특허쟁송 대응방안 등		3	1	30
특허소송사례	특허분쟁 개요, 최근동향, 외국의 소송절차 등		3	1	30
특허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특허의 요건, 명세서 작성 및 청구범위 해석		3	2	30
특허정보활용	특허정보 이해·활용·수집 등		3	1	30
특허지도 작성 실무과정	IPC 분류, 특허정보 검색 등		3	1	30

※ 교육관련 자세한 안내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교육과(042) 601-4347로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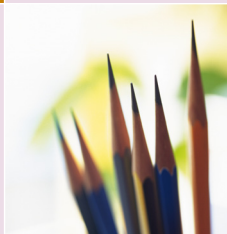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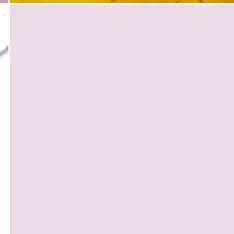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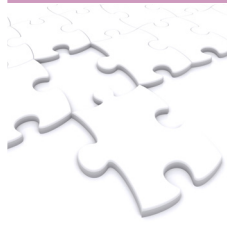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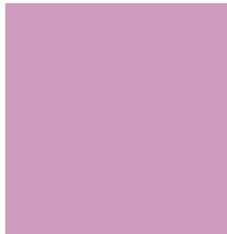
4 인터넷을 이용한 특허정보 검색

구 분	운영 또는 분야	검색사이트	비 용
국 내	한국특허정보원(KIPI)	www.kipris.or.kr	무 료
	전자정보센터	http://203.253.128.6:8088	무 료
	WIPS	www.wips.co.kr	유 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www.kisti.re.kr	유 료
국 외	유럽특허청(EPO)	ep.espacenet.com	무 료
	유럽특허정보	www.epoline.org	무 료
	일본특허청(전자도서관)	www.ipdl.inpit.go.jp	무 료
	미국특허청(USPTO)	www.uspto.gov	무 료
	러시아특허청	www.fips.ru	무 료
	소프트웨어분야	www.spi.org	무 료
	캘리포니아 대학	scilib.ucsd.edu	무 료
	Delphion	www.delphion.com	유 료
	Patolis	www.patolis.co.jp	유 료
	QPAT	www.qpat.com	유 료
	STO	www.bustpatents.com	유 료
	MICROPATENT	www.micropatent.co.kr	유 료
	DERWENT	www.derwent.co.uk	유 료
	Dialog Web	www.dialogweb.com	유 료



부록

출원, 방식심사 FAQ



제1장 출원절차

1. 출원공통업무
2. 특허·실용신안
3. 디자인
4. 상표

제2장 중간절차

1. 출원인 변경
2. 심사청구
3. 대리인·발명자
4. 기타

제3장 보정절차

1. 출원서 등 보정서
2. 명세서 등 보정서
3. 수수료 보정

제4장 기간 및 수수료

1. 기간
2. 수수료

제1장 출원절차

1. 출원공통업무



1.1.1 취하서는 출원인 중 한명만 제출해도 되나요? 언제까지 제출가능 하죠?

Answer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하지만, 취하서는 공동출원인 모두가 제출하여야 하므로 출원인 중 일부가 제출한 서류는 반려합니다.

취하서는 거절결정이나 등록결정 이후에도 해당 출원이 계속중이면 제출 가능합니다.

■ 특허법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1.1.2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Answer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0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함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함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공연구기관)



1.1.3 소기업과 중기업의 범위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Answer



○ 소기업 범위

1)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49인까지)인 기업

-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9인까지)인 기업

○ 중기업 범위

- 1) 제조업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 2) 광업·건설업·운송업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 3) 대형 종합 소매업·호텔업 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 4) 어업·통신판매업·방송판매업 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 5) 도매 및 상품중개업·공연산업 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 6) 그 밖의 모든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 증명서류의 제출

- 1) 중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또는 자본금·매출액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출원료 감면이 가능하고,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는 대표자인감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확인인이 날인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사(공인회계사)확인인이 날인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상시근로자수가 명시된 4대 보험 명세표 등이 있으며, 자본금 및 매출액 확인서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Question

1.1.4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Answer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의 변경, 다른 중소기업과의 합병, 업종의 추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당해 연도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다음 3년간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1.1.5 2개월 연장의도의 지정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수료를 미납하여 자진보정의 형식으로 수수료를 2만원만 잘못 납부했을 때 해결 방안은?

Answer



자진보정의 형식으로 수수료를 올바르게 제출하였다면 담당자가 해당 지정기간연장신청서를 수리할 수 있으나, 수수료를 부족하게 제출하였으므로 해당 출원서 등 보정서는 반려되고, 새로이 수수료를 완납하는 출원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특허·실용신안



1.2.1 특허출원서를 제출할 때 명세서에 반드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여야 합니까?

Answer



과거에는 명세서에 반드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여야 했고, 기재하지 않을 경우 특허출원서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7월부터는 특허출원 당시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허출원일(또는 특허법 제64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 전이라도 제3자의 출원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그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이 위 기한까지 명세서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되므로 이를 유념하여야 합니다.

■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5항, 제7항

Question

1.2.2 특허출원서를 제출한 후 수수료 미납으로 보정요구서를 받았으나, 깜박 잊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무효처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까?

Answer



출원인의 과실로 무효처분이 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요구를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 경우처럼 출원인의 과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특허법 제16조(절차의 무효)

Question

1.2.3 위임장과 지분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정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위임장만 보정할 경우 특허출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지분약정서는 제출하지 않고 위임장만 보정 할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경과 된 후 지분약정에 대하여만 무효처분 합니다. 이 경우 지분약정을 제외한 출원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일부무효처분 대상 : 우선권 주장, 대표자선임, 지분약정, 심사청구, 조기공개, 디자인비밀보장청구, 디자인등록출원공개, 공지에외주장

Question

1.2.4 대리인에게 변경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보정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Answer



위임할 사항에 『○○○에 관한 일체의 건』, 『○○○에 관한 기타 일체의 건』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경출원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특허법 제6조에 특별수권 사항으로 특허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출원의 취하, 특허권의 포기, 신청의 취하, 청구의 취하, 우선권주장의 주장이나 취하, 심판청구 또는 복대리인 선임이 있습니다. 위 특별수권 사항들에 대한 절차진행시 개별위임장의 위임 사항에 해당 절차에 대하여 위임받았음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해당 절차에 대한 위임사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출원서 제출시에도 특별수권 사항이므로 기존에 부여받은 포괄위임등록번호 상에 위임사항이 없으면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 특허법 제6조(대리권의 범위)



1.2.5 특허출원 할 때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정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nswer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는 대표자인감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확인인이 날인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사(공인회계사)확인인이 날인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상시근로자수가 명시된 4대 보험 명세표 등이 있습니다.



1.2.6 분할 출원시 우선권주장 3건 중 2건에 대해 우선권주장 이후에 추가로 출원서 등 보정서를 통해 우선권주장 1건에 대한 추가 보정을 하였으나 반려이유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재분할 출원 후 3건의 우선권주장을 출원하면 되나요?

Answer



우선권주장의 보정 및 추가를 할 수 있는 출원은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을 한 출원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출원서 등 보정서로 우선권주장 추가는 되지 않으며, 동 분할출원서를 원출원으로 하여 분할 출원서 제출시 3건의 우선권주장을 할 경우 방식심사에서는 수리하나 인정 여부는 해당 심사관이 판단합니다.

3. 디자인



1.3.1 디자인등록 출원할 때 참조번호는 꼭 기재해야 되나요?

Answer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조번호는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동일자)에 2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제출매체(온라인, 플로피디스크, 서면)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권리별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1.3.2 유사디자인등록 출원을 할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는 어떻게 기재해야 되나요?

Answer



기본디자인의 표시는 유사디자인등록 출원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기본디자인 출원의 출원번호, 등록번호, 참조번호 중 하나를 기재하고,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디자인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1.3.3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 및 심사처리기간은?

Answer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심사청구제도 없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등록출원은 출원일로부터 7~8월, 무심사등록출원은 출원일로부터 약 3월정도 심사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1.3.4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 하나요?

Answer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 경고할 수 있는 권리

출원인은 출원공개(PCT 국제출원은 국내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 가능

- 보상금청구권 발생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향후 설정등록시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

청구권은 특허권 설정등록 후 행사 가능(민법 제766조 규정 준용)

■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3(출원공개의 효과)

4. 상 표



1.4.1 출원인이 33류에 대한 상품류를 추가하고자 추가등록 출원하였으나 지정 상품서비스업 추가등록출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건으로 원출원의 표시를 75로 기재해서 변경출원을 해도 출원방식에서 정상처리가 가능하나요?

Answer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의 경우 이를 상표등록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40으로 상표등록 변경출원을 하면서 원출원의 표시인 75-2007-xxx을 원출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표법 제19조(출원의 변경)



1.4.2 상표등록출원시 “우선권주장”의 의미를 몰라서 출원서에 우선권주장을 체크하고 출원번호는 국내출원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nswer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출원은 우선권주장에 하자가 있는 출원이므로 특허청에서 이에 대해 보정요구서를 발송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선권주장에 대하여만 일부무효처분되고 우선권주장을 제외한 출원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우선권주장 무효처분시 우선권주장료는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표법 제20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2조(반환대상)



1.4.3 상표등록출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서 착오로 동일건이 2건 중복제출되었습니다. 아직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의 경과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nswer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보정요구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보정요구서를 받으시면 절차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출원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제출된 다른 건에 대해서는 보정에 응하지 말고 무효처분을 받으시든가 아니면 그 건에 대해서 출원취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함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까지 일괄로 하려고 합니다. 상표등록원부에 기재된 한국분류 2개류를 Nice분류 3개류로 상품분류전환등록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수수료는 상표등록원부에 기재된 상품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2개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제1항 제2호



1.4.5 갱신등록출원서의 3개류 중 2개류에 대해 수수료 부족 사항이 있어 1개류는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Answer



보정서(보정구분 : 출원서 등 보정)를 통하여 보정 할 사항(보정대상항목 : 수수료, 보정방법 : 납부, 보정내용 : 미납수수료, 보정대상항목 : 갱신등록제외대상, 보정방법 : 추가, 보정내용 : X류, XX상품 기재)을 기재하고 1개류에 대한 부족분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1.4.6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만 하고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분류(한국분류)에 따라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한 상표권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일 기간 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에 소멸하게 됩니다.

- 상표법 제46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제64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1.4.7 단체표장도 개인이 출원할 수 있나요?

Answer



단체표장의 경우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출원인을 제한하고 있어 개인은 출원이 불가능 합니다.

- 상표법 제3조의2(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4.8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이긴 하지만,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가공자 만으로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1.4.9 상표견본을 여러 개 붙일 수 있다고 하여 상표견본을 3개 첨부하였는데, 상표견본을 1개로 절차 보완하라는 절차보완요구서를 받았습니다.

Answer



출원하는 상표가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여러 개의 상표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견본의 수는 총 5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표는 1개의 상표견본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표법 시행규칙 제5조의2(상표견본의 작성 등)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2장

중 간 절 차

1. 출원인 변경



Question

2.1.1 출원서 등 보정서와 동일자로 제출된 출원인변경신청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출원서에 대하여 하자가 존재하여 보정명령을 했을 경우, 출원서 등 보정서를 통하여 보정사항이 치유되어 출원서가 수리될 때까지 출원인변경신청서는 보류됩니다.



Question

2.1.2 등록촉탁에 의한 상표권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출원 건에 대하여 출원인 변경이 가능한지?

Answer



출원서비스과에서는 등록촉탁 결정이 내려진 출원 건에 대해서는 양수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서류반려이유안내서를 발송해야 하나 양수인이 해당 출원에 대한 법원의 특허권 가압류 결정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권리이전을 원한다면 사인 간의 계약이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출원인변경도 가능합니다.

■ 특허등록령

제20조 (처분의 제한등의 등록의 촉탁) ①법원은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의 제한의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를 특허청장에게 촉탁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1.7.30>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또는 상속 기타의 일반 승계에 의한 권리의 이전의 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6.30>

Question

2.1.3 법인과 이사간의 권리관계변동시에 첨부할 서류는 어떤 서류인가요?

Answer



산업재산권에 대해 법인(영리법인) 소유의 권리를 그 회사의 이사로, 또는 이사 소유의 권리를 법인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법 제398조의 규정에 의해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첨부서류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 양도증 1부
- 양도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발급일 6개월 이내
- 양도인 인감
- 이사가 2명이상 법인인 경우 이사회 승인서, 이사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가 1명인 법인은 주주총회의결서, 주주총회참석자의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 단, 이사가 개인소유의 산업재산권을 회사에 무상양도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양도증에 반드시 “무상양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상법 제398조, 제391조, 제383조, 제368조, 제368조의2, 제371조를 참조합니다.

Question

2.1.4 A법인이 B법인으로 분할되면서 출원 건에 대해서 승계를 하였다면 제출해야 하는 서식과 증명서류가 무엇입니까?

Answer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권리관계변경신고서에서 구분에 출원인변경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증명서류로는 법인분할 사실을 기재한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분할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분할계획서 상에는 승계 대상 출원에 대한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 특허법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상법 제530조의 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2.1.5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문을 근거로 출원인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등록령 제16조에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원인변경도 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확정) 정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한다면 출원인변경이 가능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소 제220조, 제231조),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특허등록령 제16조(판결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등록신청)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2.1.6 양도계약에 의해 출원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으나, 양도 법인이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따라서 휴면회사로서 해산등기되어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출원인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해산의제된 법인은 청산회사로서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유일한 집행기관이므로 해산등기 전에 이루어진 양도계약에 따른 출원인 변경절차는 법인의 청산인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산등기 전에 작성한 양도증에 청산인의 인감을 날인 후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및 청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대법원 판결 94다7607



2.1.7 출원인이 복수일 때, 일부 출원인이 출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려면 나머지 출원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출원인 중 법인이 합병에 의해 출원인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출원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법 제37조에서는 나머지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상속, 합병, 분할 등의 원인으로 출원인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특허법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 특허법 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2.1.8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원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 출원인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외국법인이 자기소유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시 공증받은 양도증(양도인, 양수인의 이름, 주소가 출원인코드와 일치) 및 법인국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인국적증명서는 서명인의 양도자격유무가 본질적인 문제이므로, 양도증에 양도내용과 서명인의 자격이 공증(6개월 이내)되었다면 법인국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도 공증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인국적증명서의 예시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는 미국법령하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전술한 양도증서의 서명인인 ○○는 상기 법인의 대표자이며, 또한 상기 법인을 대신하여 특허, 실용신안에 관한 소정 서류를 작성할 권리를 위임받은 수권자이다.

2. 심사청구



2.2.1 출원심사청구 후 심사관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거절이유를 사유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된 상태에서 우선심사신청서가 제출될 시 방식상 수리 가능 여부 및 우선심사결정이 가능한지?

Answer



심사착수 후 우선심사신청서 제출할 시 해당 출원이 거절결정이나 등록결정이 아직 안 내려져 있다면 가능합니다.

■ 심사지침서 P 5541

심사착수 후 우선심사가 신청된 경우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우선심사대상에 해당되면 심사관은 이를 적합한 우선심사신청으로 인정하여 우선심사를 진행한다. 이 경우 중간서류 처리는 우선심사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2.2.2 외국인이 출원인일 때 우선심사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우선심사신청의 기준은?

Answer



외국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여부는 내국인 출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외국인 출원인 경우에도 우선심사대상 출원에 포함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인정합니다.

■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법시행령 제9조(우선심사대상)

Question

2.2.3 우선심사신청시에 설명서가 왜 필요하나요?

Answer



우선심사는 실용신안법이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그 우선심사사유에 해당하는 출원건에 대하여 우선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우선심사사유를 출원인이 우선심사설명서에 기재한 우선심사이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신청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

특허법시행령 제9조(우선심사대상)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우선심사대상)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1. 방위산업분야의 실용신안등록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한한다)

중략

10.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
1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Question

2.2.4 출원서에 청구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심사청구가 되지 않았으나 명세서 등 보정서를 통해 청구항을 보정하면 처리가 되나요?

Answer



청구항이 기재된 출원서에 대하여만 심사청구가 가능하므로, 명세서 등 보정서를 통해 청구항을 보정한 이후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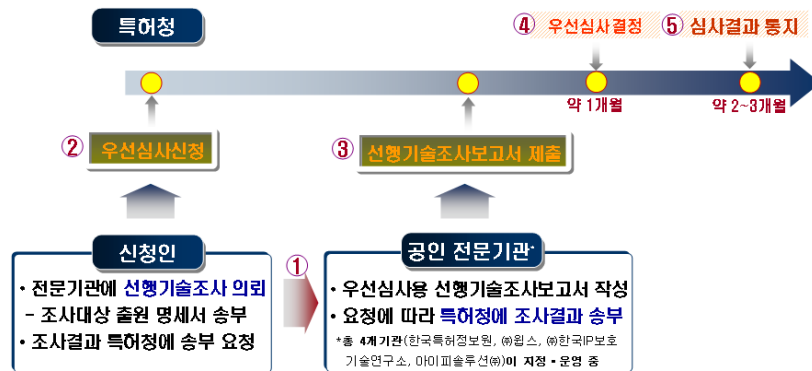


2.2.5 2008년 10월 1일부터 우선심사 대상이 확대되어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하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세부 요건과 신청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후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특허청이 지정한 4개 전문기관¹⁾ 중 한 곳에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의뢰
 - 의뢰시 조사대상 출원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선행기술조사결과를 특허청에 제출토록 요청(선행기술조사 비용은 우선심사 신청인 부담)
- ② 특허청에 우선심사신청서 제출
 - 의뢰기관, 의뢰일자 및 조사결과 제출 요청 사실 등을 간략히 기재
- ③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여부 확인
 - 일반적으로 조사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완료

■ 출원인 유의 사항

- 별도로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 보고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전문기관에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기관에서는 출원명세서와 이전의 선행기술조사 의뢰내용을 비교하여 보고서의 재작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전기전자·정보통신 기술분야만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주)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의 경우에는 해당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국제특허분류로 확정된 이후에만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고시 제2008-21호)

1) 한국특허정보원, (주)웹스, (주)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 아이피솔루션주식회사

Question

2.2.6 발명자가 심사청구시 감면사유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Answer



출원인이 면제사유가 아니라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발명자가 출원인이 같은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70이 감면됩니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특허료 등의 면제 및 감면)

- ① 국민기초생활보정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된 장애인, 학생(대학원생제외), 만 19세 미만의 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이 면제됨
- ②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만) 또는 소기업의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의 100분의 70분

3. 대리인·발명자

Question

2.3.1 특허여부결정이 되면 오기재임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 발명자의 정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재임이 명백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Answer



출원인이 착오로 발명자의 기재를 누락 하거나 오기한 경우 특허여부결정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여부결정 이후에는 오기재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정정만 가능합니다.

■ 오기재임이 명백한 경우

- 발명자의 성명이 개명을 통해 변경된 경우
- 출원시 동일 발명자를 중복 기재한 경우
- 발명자(외국인)의 성명이 음역상의 차이로 타 출원건과 불일치 하는 경우
- ※ 발명자 정정시 기재 착오로 인해 삭제된 발명자의 추가는 해당되지 않음

■ 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2.3.2 대리인선임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 없이, 추후에 복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제출시 선임의 효력이 소급되는가?

Answer



위임장(포괄위임등록번호)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시 대리인선임의 효과가 있는 서류는 출원서, 출원인변경신고서 등이 이에 해당되며, 대리인에 대한 보정 없이 복대리인선임신청서가 수리되면 접수 날짜부터 복대리인선임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보정요구서에 대한 보정서 미제출시는 해당서류가 무효처분 됩니다.

■ 특허법 제16조(절차의 무효)

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정)

특허법시행규칙 제5조(대리인선임)

②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 특허출원인변경신고, 심판 청구 재심청구를 하거나 심판심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3 출원이 심사전치단계에 있습니다. 발명자를 추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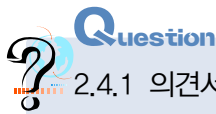


발명자의 보정은 특허여부결정 전에 추가 및 정정이 가능합니다. 심사전치는 거절결정 이후로서 거절결정을 취소할지가 불확실하므로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사전치단계에서도 발명자의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것은 인정되며, 취소환송에 의해 심사관이 재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거절결정이 취소된 것이므로 발명자 추가도 가능합니다.

■ 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4. 기 타



2.4.1 의견서의 취하가 가능한 건지?

Answer



현재 특허법 시행규칙은 취하 및 포기규정은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으로 보고 있으며, 특허청 법령서식에 의하면 취하서의 서식 예를 볼 때 그 내용이 출원, 이의신청, 조기공개신청, 우선심사신청,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우선권주장취하, 일부 청구항 포기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에 대한 취하 또는 기타 보정서에 대한 취하는 제출한다 하더라도 반려대상이 됩니다.

■ 특허법 시행규칙 제19조(포기 또는 취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2 조약우선권에 기한 우선권증명서류 제출시 출원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Answer



조약우선권주장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출원인의 동일성, 출원의 정규성, 우선권주장기간의 준수, 우선권주장 취지의 기재, 출원내용의 동일성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조약

조약 당사국 국민 또는 당사국에居所 또는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 영업소를 가지는 비당사국 국민



2.4.3 선출원의 출원인이 A인데, 착오로 인하여 후출원의 출원인을 B로 하여 우선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후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을 A로 변경을 하면 우선권주장이 인정되나요?

Answer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서 제출시점에서 원출원의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완전 동일해야 하므로, 추후에 권리관계 변경을 통하여 출원인을 일치시키더라도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



2.4.4 출원에 대한 정보 제출서를 제출해야 하는 바, 심사전치 출원의 심사결과통지서를 받은 후 제3자 정보제출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되나요?

Answer



심사전치에 관한 심판서류철이 이송되어 심사관에게 서류가 이송되었을 시에는 출원번호를 기재하여 정보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전치출원의 심사결과통지서가 발송되면 이는 심사관에서 심판원으로 서류가 이송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심판청구번호를 기재하여 심판원으로 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정 절차

1. 출원서 등 보정서



3.1.1 상표등록출원(업무표장)서를 제출하였으나,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요구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Answer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는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업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의 공통 기재사항외에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정관, 관련법령, 조례, 규칙, 지정업무의 경영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 상표법 제9조(상표등록출원)



3.1.2 출원인변경에 대한 서류제출 후 위임장제출에 대한 보정요구서를 받았습니다. 포괄위임등록번호가 있는데 위임장 대신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해도 되는지요?

Answer



서면위임장 외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받았다면 보정서 제출시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가능 합니다. 위임장(포괄위임등록번호) 보정시 수수료는 3,000원(서면 제출시/3,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특허법시행규칙 제5조의2 (포괄위임)

포괄위임등록번호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의 특정 없이 포괄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으로, 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차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3.1.3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을 동일자에 각각 제출하였는데 유사디자인의 기본 디자인의 표시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보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동일한 제출인이 동시(동일자)에 2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참조 번호를 기재합니다. 유사디자인등록출원시 동시(동일자)에 제출한 기본디자인출원서의 참조 번호를 기본디자인의 표시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보정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유사디자인등록 출원과 동시(동일자)에 제출한 기본디자인의 참조번호를 기본디자인의 표시란에 기재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1.4 유사디자인의 기본디자인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보정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Answer



유사디자인등록 출원의 경우에는 기본디자인의 표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본디자인의 표시에는 기본디자인 출원의 출원번호, 등록번호, 참조번호 중 하나를 기재하고,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추가로 [디자인일련번호]란에 해당 디자인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1.5 반려이유안내서를 받았습니다. 제출원인번호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Answer



모든 서류에는 발송번호 및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출원의 이력과는 관련이 없는 제출원인번호를 기재할 경우에는 반려대상이 됩니다. 해당 서류가 반려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Question

3.1.6 특허출원시 수수료 등이 면제대상인 학생에 해당하여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재학증명서로는 제출일 현재 재학중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보정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정을 해야 하나요?

Answer



대학원의 재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재학생이 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수수료 등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원일 현재 학생임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출원일이 해당하는 학기(1학기:3월~8월, 2학기:9월~익년2월)에 발급된 재학증명서를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Question

3.1.7 보정명령에 대한 출원서 등 보정서와 자진보정서를 같이 제출했습니다. 처리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출원서 등 보정서는 순서대로 처리되며, 선행 서류가 무효처분 또는 반려안내서가 발송되는 등의 처분이 끝나야 뒤 서류가 처리됩니다. 선행 서류가 보정요구 상태이면 선행 서류에 대하여 기간단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특허법시행령 제16조(기간의 지정)

- ②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10조 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3.1.8 상표등록출원(단체표장)을 하였고, 보정서로 수정정관 제출을 하였으나, 서류 반려이유안내서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제출하신 서류는 수정정관 제출 보정서로써, 수정정관의 제출은 상표법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정관의 수정이 필요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수정정관 제출시에는 정관의 요약서 및 정관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반려됩니다.

만약, 상표출원서 제출시 정관과 정관의 요약서가 미제출 되어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정관과 정관의 요약서를 보정서(보정구분 : 출원서 등 보정)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표법 제9조 제3항

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한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제2조 제1항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명세서 등 보정서



3.2.1 의견서제출기간이 지났다면 명세서 등 보정서를 출원서를 원인으로 해서 제출할 수 없는지 또는 분할출원은 언제 가능한지?

Answer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었다면 의견서제출기간내에 한하여 명세서 등 보정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거절이유통지받은 경우 분할출원은 의견서제출기간내에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출원인은 제42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또는 심사관의 특허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보정 할 수 있으며,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내에 한하여 보정 할 수 있다.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20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Question

3.2.2 수수료납부대기중 및 방식보류중인 명세서 등 보정서의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Answer



명세서 등 보정서는 접수순서대로 처리되고 있으며, 동일자에 명세서 등 보정서가 들어왔으나 선행서류가 수수료 납부대기 중인 경우, 약 5일 정도 수수료납부 대기상태에 있으며 방식담당자에게 배정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게 되고 약 한 달 후에 무효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정요구서에 대한 기간단축신고서 제출하게 되면 무효처분이 가능합니다.

Question

3.2.3 권리관계변경신고서 제출후 notary seal 날인이 되지않았다는 보정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

Answer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나 공증의 경우 상업적 관습에 의하여 notary seal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각국의 공증제도 p.63 (법무부발행자료 제140집, 미국의 공증제도편)
- 주법에서 요구하고 있느냐를 불문하고 선량한 사업실행, 관습과 상업적 관행은 모든 공증인이 그의 성명, 직함, 관할, 임기만료일과 주소를 담고 있는 고무스탬프와 더불어 직무 철인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Question

3.2.4 명세서 등 보정서를 기간단축 후에 명세서등 보정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는가?

Answer



명세서 등 보정서 제출시 기간단축을 하였다면 원래의 의견제출통지 기한 내라도 더이상 명세서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합니다.



3.2.5 최종본 파일은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파일에는 최근 명세서 등 보정서의 보정내용이 없는데, 보정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nswer



최종본 파일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의 내용은 순서대로 이력이 생기므로 최종본 파일을 다운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6 명세서 등 보정서를 기간단축에 표시하여 제출 후 명세서 등 보정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Answer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기간단축을 한 경우 의견제출통지서의 의견제출지정기간이 단축되므로 추후에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의 최후의견제출 통지서가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출원인은 명세서를 제42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또는 심사관이 특허결정 등록송달전까지 보정 할 수 있으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하여 보정 할 수 있다.

특허법시행령 제16조(기간의 지정)

②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10조 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3.2.7 첨부문서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첨부문서 작성시 여러 장일 경우 ATT 파일로 변환하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최초에 s/w 전체 설치하였다면 문제없으나 부분설치를 하였다면 다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입력기를 통해 ATT 파일로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새로운 첨부서류파일을 작성하기 위해서 첨부서류입력기 메뉴의 '파일 → 첨부서류 생성'을 선택하면 작성할 첨부서류의 종류를 선택하는 대화 창이 나타납니다.
- ▶ 첨부서류의 종류는 사전등록서류, 출원서류, 중간서류, 이의신청 서류, 심판서류, 등록서류, PCT첨부서류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항목을 선택할 때마다 대화 창에 표시되는 첨부서류의 종류 및 서류코드가 달라집니다.
- ▶ 작성하고자 하는 첨부서류를 목록에서 찾기 어려운 경우 대화창의 검색어 부분에 서류를 찾기 위한 검색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선택하면 입력한 검색어와 일치하는 첨부서류의 종류 및 코드를 대화 창에 표시합니다.
- ▶ 작성하고자 하는 첨부서류를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작업선택 대화 창이 나타납니다. 대화 창에서 첨부서류파일에 첨가할 이미지 파일을 스캐너로부터 스캔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스캔하기 버튼을 선택해야 하고, 사전에 첨부서류를 이미지파일로 저장해 놓았으면 그냥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가. 이미지 스캔하기

스캔 할 이미지를 저장할 폴더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스캔 할 이미지의 파일명과 스캔 할 이미지의 개수 또는 이미지의 해상도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파일로부터 추가하기

이미지 스캔 작업을 하지 않고 미리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이 있을 경우 파일 폴더 창에 나타난 이미지 파일들의 목록에서 첨부서류파일에 추가하고자 하는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선택한 이미지파일이 화면 오른쪽 이미지 창에 나타나게 되며 이미지파일 그리드에도 추가가 됩니다.

- ▶ 첨부서류의 첨부가 완료된 이후 첨부서류입력기의 파일 → 첨부서류 저장 작업을 통해 ATT파일을 생성합니다.



3.2.8 명세서 등 보정서의 제출원인번호는 어떤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요?

Answer



명세서 등 보정서는 출원서 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제출원인으로 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2항

명세서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3.2.9 이중출원불인정예고통지서 발송 후 불인정 예고통지서를 발송원인으로 하여 제출한 명세서 등 보정서의 수리 여부?

Answer



이중출원불인정예고통지서는 이중출원의 불인정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이므로 의견서만 접수 후 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견제출통지서의 제출기간이 경과 하였다면 명세서 등 보정서는 제출할 수 없으며, 심사처리상 이중출원불인정통지서가 발송된 후 최후의견 제출통지서를 발송하여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심사지침서 P4341

이중출원 불인정통지 후 심사는 이중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 중 이중출원의 명세서를 보정 하여 원출원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을 삭제한 경우에는 다시 출원일을 소급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3. 수수료 보장



3.3.1 출원에 대하여 정상 수수료를 납부기일 이내에 은행에 직접납부 하였는데, 수수료가 미납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nswer



온라인으로 납부했을 경우에는 오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출원서 중복제출 여부를 확인하면 되고, 은행에 직접 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한 은행에 해당 출원서의 납부자번호에 맞게 수납되었는지 확인하고 잘못 입력되었으면 잘못된 번호를 확인하여 방식담당자에게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

제2조(대상) ①수수료 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의거 납부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민원인은 수수료 등을 정당하게 납부하였으나, 은행이 영수증의 기재사항(납부자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
2. 민원인이 수수료 등의 적정금액을 납부하였으나, 착오에 의하여 영수증의 납부자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3. 민원인이 착오에 의하여 정당 납부일에 같은 납부자번호로 2회 이상 납부한 수수료 등을 정당한 납부자번호와 정당한 금액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4. 보정통지서에 의하여 부족수수료를 납부한 후 납부기한 경과로 반환되는 수수료 등의 납부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5. 특허료·등록료 및 등록관련 수수료 납부 또는 서류의 흠결로 인하여 불수리된 후 이미 납부된 등록관련 수수료 등을 수수료 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일에 납부된 수수료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6.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대상 수수료 등을 수수료 등 납부사항 정정신청일에 납부된 수수료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3.3.2 장애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면제대상으로 출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수료 미납 사유로 보정요구서를 받았습니다.

Answer



수수료 면제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5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연간 50건을 넘은 건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10건에 한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개정(안) [2009. 01. 01. 시행]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한다.



3.3.3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요구서를 받았습니다. 향후 해당출원에 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의사가 없어서 무효처분을 신속히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Answer



해당출원에 대하여 향후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으신 경우, 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보정서의 제출기한이 단축되어 해당출원의 무효처분이 보다 신속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특허법시행규칙 제16조(기간의 지정)



3.3.4 특허출원시 출원인이 만 19세 미만인 자로 수수료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수수료(정상납부자)를 납부하라는 보정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출원인이 만 19세 미만인 자의 경우 수수료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Answer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6호에 해당하는 자가 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인 경우에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가 발명자가 아닌, 단순히 출원인일 경우에는 수수료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허법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제4장

기간 및 수수료

1. 기 간



4.1.1 특허출원에 대한 분할출원은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나요?



Answer

특허법 제52조 제1항은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한하여 출원의 분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보정 할 수 있는 기간과 같습니다.

■ 권리별 보정기간

권리별	보정기간
특 허 (2001.6.30 이전 출원)	○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3개월 이내인 경우 -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진보정 가능 ○ 출원일로부터 1년3월 경과 후 - 심사청구와 동시에 - 의견제출(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기간내 -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청구시에는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특 허 (2001.7.1. 이후 출원) 실용신안 (2006.10.1. 이후 출원)	○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전(자진보정기간) 또는 최초거절이유 통지의 의견서 제출 기간내 -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보정 가능(신규사항 추가금지) ○ 최후거절이유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시에는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특히 특허청구범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보정가능 ·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 잘못된 기재의 정정 ·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심사관이 거절이유 통지에서 지적한 경우에 한함) -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변경하지 않을 것 -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시 특허받을 수 있을 것

권리별	보정기간
디자인	○ 결정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인 경우 -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진보정 가능 ○ 결정통지서가 송달된 후인 경우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상 표	○ 출원공고 결정전 -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진보정 가능 -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제출기간내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출원공고 결정후 -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제출기간내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내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4.1.2 공시송달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가? 공시송달에 따른 심판청구 가능기간은?

Answer



최초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웹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에 따른 심판청구가능기간은 그로부터 30일입니다.

■ 특허법 219조(공시송달)

- 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 ② 공시송달은 송달 할 서류를 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특허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
-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웹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동일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웹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법 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Question

4.1.3 보정요구서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은 몇 개월까지 할 수 있나요?

Answer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은 매회 1월 또는 1월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통산하여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하여 국내단계 절차를 진행하는 국제특허출원 등 지정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개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2조(절차의 보정기간 등)

Question

4.1.4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기준일이 경과하지 않아서 반려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기준일이 무엇이며 언제 보정이 가능합니까?

Answer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이 경우 기준일 경과 후에 명세서 등 보정서의 제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이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심사청구일이 기준일이 되며 심사청구 이후 명세서 등 보정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제특허출원은 PCT에 의하여 인정된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제출원일 이후에는 보정이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수수료의 납부 및 번역문 제출 전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계속될 것인지 여부가 확정적이지 아니하고, 국제출원에 대한 번역문의 내용도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보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특허법 제208조(보정의 특례)

2. 수수료



4.2.1 출원시 소기업이지만 감면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감면받지 못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였는데,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Answer



출원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출원서 제출 당시에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제4항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면제분 또는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및 권리관계변경신고 등을 할 당시에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반환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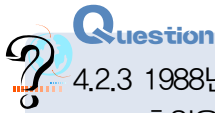


4.2.2 청구항을 추가 보정한 명세서 등 보정서와 심사청구서를 동일자에 제출한 경우 청구항 추가 수수료는 어느 서류에 납부해야 되나요?

Answer



명세서 등 보정서가 처리된 이후 심사청구서를 처리하므로 명세서 등 보정서에 청구항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심사청구서에 납부하여도 정상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방식 심사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4.2.3 1988년 최초 출원시에는 상품류가 1개류였는데 1998년에 존속기간갱신등록 출원을 하면서 상품류 구분이 한국상품분류제도에서 국제상품분류(니스분류)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상품류가 3개류로 변경되었습니다. 2008년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온라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수수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합니까?

Answer



최초 출원시 상품류가 1개류였더라도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시 현재 상품류가 3개류이므로 (1상품구분마다 56,000원) 168,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 「상표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표등록출원료(서비스표등록출원료·단체표장등록출원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료 및 업무표장등록출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료(「상표법」 제4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전에 출원하는 경우) 및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및 지정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가등록출원료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상품류구분마다(서비스업류 구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만6천원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상품류구분마다 6만6천원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료(「상표법」 제4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상품류구분마다 8만5천원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상품류구분마다 9만5천원



4.2.4 의견제출통지 후에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고(수수료 납부) 차후에 다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할 때 기존의 수수료는 돌려받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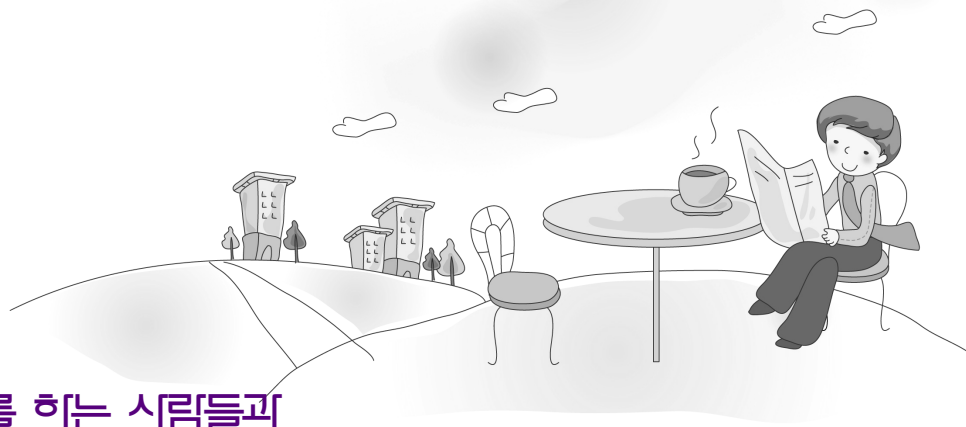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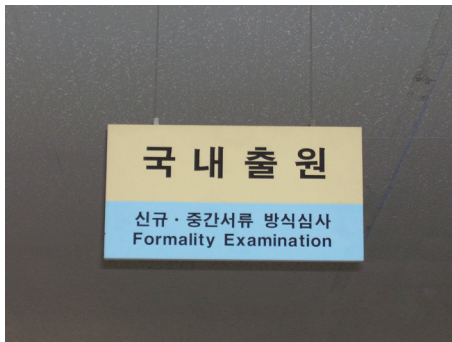
수수료 등은 '특허료 등의 반환요령' 규정에 따라 반환하며, 명세서 등 보정서는 반려 또는 무효사유가 아닌 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제2조(반환대상)

- 1) 과오 납부된 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등
- 2)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규정에 의해 반려된 경우 기 납부한 수수료 등
- 3) 출원무효처분 등의 경우 출원료를 제외한 수수료(심사청구료, 우선권주장신청료, 등록료)
- 4) 특허료 징수규칙에 의해 우선심사가 각하된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한 우선심사신청료
- 7)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분할, 변경,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 제외) 1개월 이내에 출원 취하포기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출원 방식심사를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



click, click... 따르~릉, 따르~릉...

출원서비스과 방식심사담당자의 하루는 1천여 번 이상의 click과 씬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함께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제도가 개선될 수도, 시스템이 편리하게 바뀔 수도 없는 숨가쁜 하루하루입니다.

우리 스스로 출원인이 되어 출원절차와 시스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였고, 출원 가이드북은 그 고민의 흔적 중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최우선' (Customer First) 핵심가치를 내재화 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출원서비스과 직원 일동

편집위원장

이태인 출원서비스과장

편집위원

권도훈	 행정사무관	조용민	 주무관
이준희	 주무관	김훈건	 주무관
김재민	 주무관	김호정	 주무관
문한규	 주무관		

감수

문기권	 행정사무관	김명희	 주무관
최양순	 주무관	신정옥	 주무관
박인화	 주무관	임채기	 주무관
강경호	 주무관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출원가이드북

■ 발행일 : 2008년 12월

■ 발행처 : 특허청 고객서비스국 출원서비스과

연락처 : (042) 481-8350

F A X : (042) 472-0671